2021년 개정판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Mexico Investment Guide

ESG 경영 사례 수록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Mexico Investment Guide

목차

I. 투자환경 / 6p

1. 투자여건 / 8p
2. 투자동향 / 11p
3. 투자유치제도 / 20p

II. 투자절차 / 24p

1. 사전조사 / 26p
2. 투자진출 형태 / 33p
3. 투자진출 방식 / 36p
4. 철수 / 66p

II. 현지 경영관리 / 75p

1. 노무관리 / 76p
2. 세무회계관리 / 116p
3. 지적재산권 / 127p
4. ESG 경영활용방안 / 144p

» 발간사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이자 최대 교역 국가로서 2005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우리나라와 멕시코 수교 60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멕 FTA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제조·생산 기반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국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는 전 세계 인구 규모 중 10위에 달하는 큰 소비시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억 3천만 명 수준),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R&D 및 첨단산업 거점지인 미국과 인접하고 있고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시장 진출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역외 수출 관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부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경제협정(USMCA)으로 인하여 멕시코 로컬 기업 및 현지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남미 지역 간 가치사슬이 강화돼 역내 교역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벤츠, 토요타, 아우디 등 80여개사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팬데믹 이후 수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멕시코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OTRA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 지원하고자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멕시코에는 현재 42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기업 및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KOTRA는 멕시코의 최근 변화하고 있는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실무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멕시코 투자 진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산업별 인센티브, 현재 멕시코 산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 사항 등 우리 기업 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내용 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사례를 담아 전략 가이드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멕시코 투자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 집필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멕시코시티무역관과 본사 투자 MnA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KOTRA Invest KOREA 대표 장상현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Ⅰ. 투자환경

1. 투자여건
2. 투자동향
3. 투자유치제도

1. 투자여건

1.1. 경제 동향

2020년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19팬데믹으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어 8.5% 하락하였으며, 이는 14%가 하락했던 1932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2020년 멕시코 페소화는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과 현지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맞으며, 달러당 19.93페소로 마감했다. 2020년 4월 페소화는 사상 최저치로 달러당 25.73페소대를 보였다.

2020년 멕시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총 290억 7,900만 달러로 2019년 동기간 대비 11.7%, 2019년 최종 총액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고려된다.

유엔 중남미 · 카리브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생산력과 글로벌 회사들의 생산 체인 재구성 덕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발효로 인한 투자 기대로 연말 회복이 예상된다.

2020년 수입은 총 3,831억 9,400만 달러로 연간 15.8% 감소하여 지난 11년 동안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수출은 총 4,176억 7,000만 달러로 2019년보다 9.3% 감소했다.

'21년에는 평균 4.3%의 경제 회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오차 범위를 2.3%에서 5.3%로 예상된다. IMF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 확대 및 멕시코 백신 접종 계획 추진에 따라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 '21년 GDP를 5.0%대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1년 3월 4.5%로 GDP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미국의 빠른 경기 회복세가 멕시코의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21년 1월 기준 GDP 3.7%대 전망에서 미국 신정부와의 교역 확장,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4.53%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외 다수 기관에서 멕시코 인프라 투자 계획 및 USMCA 확대에 대한 기대에 따라 내수 경기 활성화로 GDP 전망을 상향하였다.

'21년 1분기 멕시코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멕시코 경제 회복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백신 접종 계획의 신속한 이행에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무부는 멕시코 경제 회복과 성장은 백신 예방 접종의 진행 속도와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멕시코의 주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경제회복과 유가 상승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21년 1분기 멕시코 수입액은 약 1,13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1년 3월 수입액 약 31.4% 상승, 1분기 전체는 약 8% 상승한 것으로 내수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중간재(80.2%), 소비재(11.4%), 자본재(8.4%)로 집계되었다.

최근 5개년 멕시코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2.91	2.11	2.13	-0.14	-8.5
명목GDP (십억$)	1,199.03	1,227.06	1,253.9	1,250.17	1,076.16
1인당 GDP (PPP, $)	19,612.2	19,795.9	19,992.2	19,746.4	18,134.08
1인당 명목 GDP ($)	8,739.76	9,278.42	9,673.44	9,799.42	8,421.19
정부부채 (% of GDP)	48.2	46.1	46.1	45.5	52.27
물가상승률 (%)	3.36	6.77	4.83	2.83	3.15
실업률 (%)	3.86	3.42	3.32	3.38	4.4
수출액 (백만$)	373,948.3	409,432.6	450,713.1	460,703.8	417,670.4
수입액 (백만$)	387,070.5	420,394.6	464,302.4	455,295.3	383,193.9
무역수지 (백만$)	-13,122.2	-10,962	-13,589.3	5,408.5	34,476.5
외환 보유고 (백만$)	176,541.5	172,801.8	174,792.5	180,877.2	190,910.4
이자율 (%)	5.75	7.25	8.25	7.27	4.25
환율 (자국통화)	18.69	18.92	19.24	19.26	21.5

〈자료원 : IMF, OECD, 현지언론 종합〉

1.2. 투자입지여건

❯ 멕시코시티(CDMX)

멕시코의 수도로 멕시코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주가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주로 승격되었다. 멕시코 내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한 지역이다. 또한, 멕시코 내 다양한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다.

❯ 누에보 레온(Nuevo Leon)

멕시코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과 인접해 대 미국 수출 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활동하고 있어, 다수의 한국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진출기업 기아자동차, Whirpool, Navistar, Carrier 등 (*자료원: Citius Capital)

❯ 과나후아토(Guanajuato)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 내 섬유 산업의 중심지이며 한국 양말 업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진출기업 Mazda, Honda, Toyota, GM 등 (*자료원: Citius Capital)

2. 투자동향

2.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개요

멕시코는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제조 규모 및 지리적 조건, 숙련된 인력 및 저렴한 인건비, USMCA 등 광범위한 국제 조약 네트워크 등의 전략적 투자 가치가 있다. 멕시코는 미주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거점으로 해 주변 국가로의 진출 확장이 용이하다. 멕시코는 현재 50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 미주,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관세 혜택을 활용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으로 전 세계 10위이며, 평균연령이 29세이다. 즉, 멕시코는 소비연령층이 두터우며, 출산율도 높아 향후 40년간 소비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최근 동향

지난 10년간 멕시코로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추이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91%가 증가했다. 2007년 멕시코 경제부 자료 기준으로 313억 7,990만 달러까지 기록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10월 이후 세계 경기침체와 2009년 4월 이후 신종플루 사태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0년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2011년 다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신용위기 등 세계 경제위축에 따라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26억 5,94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의 벨기에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인수건 때문이다. 2015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83억 8,200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로 추가 투자 및 증설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9년 3분기에는 AB InBev 그룹이 Grupo Modelo를 인수하며 신규 투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멕시코 FDI 유입액은 2013년 동기 이래 멕시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2월 멕시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금은 290억 7,940만 달러로 전년도 329억 2,120만 달러 대비 11.7% 낮았다.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흐름도 타격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 대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1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외

국인 투자유치국가순위 2019년 14위에서 2020년 9위로 부상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가 뒤를 이었다.

| 표 Ⅰ-1 | 1980-2020년 연도별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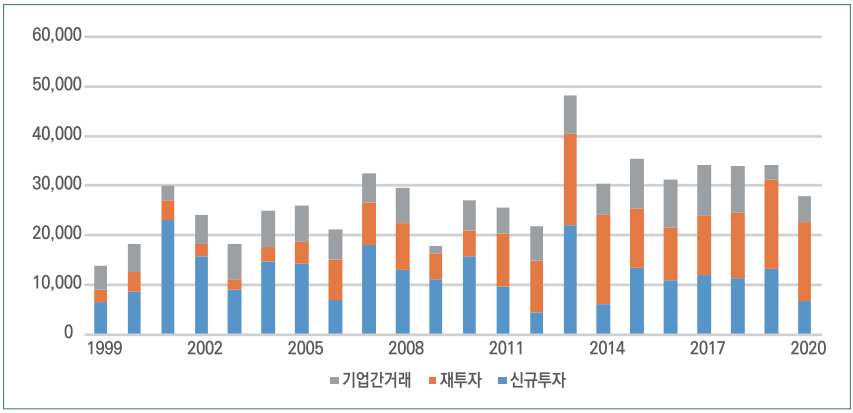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경제부(도착액 기준), 2021

지역별 분포 최근 동향

멕시코 투자는 멕시코시티와 국경지대에 매우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지난 10년간('11~'20) 멕시코의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금액을 살펴보면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전체 투자의 18.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이 밖에 주도인 톨루카를 비롯하여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주는 9.5%, 북동부 산업의 중심지인 누에보레온(몬테레이 중심)은 7.9%에 달한다. 이 외에 IT 산업이 발달한 할리스코와 마킬라도라(보세임가공)[1]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치와와(시우다드 후아레스 중심)가 각각 5.6%와 5.0%를 차지한다.

1_ Maquiladora. 마킬라도라 산업은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미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노동집약적 보세가공 산업을 지칭함.

| 표 Ⅰ-2 | 2011~2020년 멕시코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순위	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1	Ciudad de México	7,503	1,286	5,728	6,130	5,955	6,810	5,223	5,850	8,397	6,726	59,606	18.5%
2	Estado de México	2,711	3,118	4,608	3,580	2,958	2,403	3,798	2,314	2,949	2,308	30,747	9.5%
3	Nuevo León	1,679	1,281	2,212	1,578	3,353	3,340	1,990	3,607	3,234	3,084	25,358	7.9%
4	Jalisco	1,036	1,415	2,938	1,686	2,707	2,037	1,545	937	1,557	2,143	18,001	5.6%
5	Chihuahua	1,218	1,187	2,311	1,934	2,480	1,983	1,822	1,239	1,403	632	16,209	5.0%
6	Coahuila de Zaragoza	647	539	1,805	1,625	1,367	1,210	2,679	3,273	1,493	856	15,493	4.8%
7	Guanajuato	1,425	1,321	2,621	1,318	1,753	1,333	1,752	2,448	807	164	14,940	4.6%
8	Baja California	766	1,019	1,291	1,217	1,167	1,567	1,678	1,635	1,082	1,107	12,529	3.9%
9	Tamaulipas	843	1,051	1,732	724	1,101	1,146	1,538	1,510	1,622	694	11,962	3.7%
10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1,189	1,053	1,703	1,271	1,589	1,045	915	959	1,079	1,067	11,871	3.7%
11	San Luis Potosí	268	880	2,008	1,065	1,899	815	1,406	1,766	841	920	11,869	3.7%
12	Puebla	594	759	1,441	1,057	792	1,163	952	644	2,044	594	10,040	3.1%
13	Querétaro	1,048	98	912	1,107	1,432	1,067	985	1,217	1,167	855	9,888	3.1%
14	Zacatecas	467	754	3,973	759	108	533	458	302	746	-406	7,694	2.4%
15	Sonora	304	1,172	2,089	993	610	498	360	160	468	580	7,234	2.2%
16	Aguascalientes	189	355	45	939	791	593	1,576	1,197	452	754	6,892	2.1%
17	Baja California Sur	711	739	421	233	373	523	595	492	642	665	5,394	1.7%
18	Michoacán de Ocampo	151	336	2,246	211	419	194	295	437	298	284	4,871	1.5%
19	Quintana Roo	508	628	1,005	224	327	297	484	580	636	122	4,812	1.5%
20	Oaxaca	178	354	1,943	483	297	196	497	486	55	261	4,749	1.5%
21	Sinaloa	231	433	605	400	429	435	762	414	261	739	4,707	1.5%
22	Tabasco	233	325	324	241	738	112	400	529	489	462	3,854	1.2%
23	Morelos	102	274	451	357	485	235	603	252	656	387	3,801	1.2%
24	Guerrero	242	164	1,088	479	164	180	410	402	276	297	3,703	1.1%
25	Hidalgo	266	179	470	-66	524	445	354	185	283	276	2,914	0.9%
26	Durango	229	268	482	156	231	266	101	384	180	544	2,842	0.9%
27	Nayarit	148	157	536	116	104	91	103	194	172	802	2,424	0.8%
28	Campeche	25	210	279	219	543	142	328	123	152	140	2,161	0.7%
29	Tlaxcala	251	80	81	121	143	252	167	141	346	358	1,940	0.6%
30	Yucatán	166	128	517	86	214	125	108	85	159	148	1,734	0.5%
31	Chiapas	93	121	182	37	270	139	217	69	256	131	1,515	0.5%
32	Colima	155	60	168	196	165	-24	132	91	42	92	1,076	0.3%

자료: 멕시코 경제부, 2021

국별 투자 동향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 10년간('11~'20)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미국의 비중은 40.6%에 달한다. 연도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39.3%, 2018년 34.5%로 감소한 해도 있으나 2011년 51.2%, 2015년 54.5%로, 전반적으로 40~50%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힘입어, 2020년 37%를 유지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7.6%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전체 외국인직접 투자금 118억 6,403만 달러 중 미국의 투자금은 50억 4,800만 달러로 전체 42.54%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진행 및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통해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외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멕시코의 주된 투자국이다.스페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2위 투자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캐나다, 독일,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데,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며 네 번째 투자국이 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전체 1.6%로 10위인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0.35%), 홍콩(0.19%)이 잇고 있다.

2020년 주요 투자국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으로 미국의 주요 투자 부문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 산업, 무역업이었으며, 캐나다의 투자는 운송업, 광업, 금융 및 보험,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주로 집중되었다. 스페인의 경우, 가장 큰 투자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 정보 서비스업, 숙박 및 요식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국가의 투자는 일본이 5위, 한국이 11위, 중국이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98.78%)였으며 특히 운송장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와 무역 중개 부문이 주를 이뤘다. 일본의 주요 투자 부문도 85%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었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운송장비(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67.82%) 및 금속 제품 제조(4.05%)가 주요 분야였다. 중국 또한 제조업(45.19%)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26.69%)가 뒤를 이었다.

| 표 Ⅰ-3 | 2011~2020년 멕시코 투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1	미국	13,089.8	9,726.4	16,946.8	10,480.1	19,331.7	11,046.7	15,530.0	11,717.7	12,879.0	10,303.8	131,052.0	40.6%
2	스페인	3,533.2	-349.8	453.9	4,457.0	3,903.3	3,567.3	3,361.0	4,166.4	4,061.1	4,005.2	31,158.5	9.7%
3	캐나다	1,589.5	1,680.6	5,105.1	2,963.2	1,096.6	2,298.8	2,826.6	4,193.5	2,949.7	4,224.4	28,928.0	9.0%
4	독일	854.1	1,171.8	1,983.1	2,158.9	1,288.1	2,849.4	2,740.3	2,965.5	3,526.9	740.2	20,278.1	6.3%
5	벨기에	374.3	-147.4	13,321.6	1,269.4	826.9	1,122.6	1,041.2	67.6	1,370.6	306.1	19,552.9	6.1%
6	일본	955.7	2,307.5	1,660.6	2,460.0	2,222.2	1,962.0	2,440.6	2,280.2	1,476.6	1,228.1	18,993.5	5.9%
7	이탈리아	222.4	564.0	-419.5	284.1	606.9	806.2	1,864.7	1,530.9	1,501.9	681.9	7,643.5	2.4%
8	프랑스	572.3	719.8	759.7	1,200.7	972.0	454.8	547.0	620.2	1,036.5	281.7	7,164.7	2.2%
9	영국	249.3	259.7	1,353.7	238.9	364.7	455.8	500.6	660.5	710.6	874.8	5,668.5	1.8%
10	네덜란드	241.7	897.2	1,010.4	575.3	299.5	226.6	-207.5	751.7	907.8	791.4	5,494.2	1.7%
11	한국	143.2	217.8	472.7	611.3	1,013.2	1,124.9	258.8	704.4	172.1	601.4	5,319.7	1.6%
12	브라질	417.0	492.1	162.9	629.0	1,145.3	912.6	-131.0	114.0	310.0	346.9	4,398.7	1.4%
13	아르헨티나	94.5	408.5	64.0	354.3	517.9	287.2	349.7	1,085.0	464.0	663.5	4,288.6	1.3%
14	호주	22.0	24.1	58.5	20.8	685.6	97.1	1,378.9	608.4	767.7	337.1	4,000.3	1.2%
15	스위스	32.9	216.2	439.3	296.8	225.7	584.0	300.4	631.1	721.7	522.3	3,970.5	1.2%
16	이스라엘	6.2	112.1	12.1	8.8	-1.6	2,015.2	2.4	1.8	-2.8	0.8	2,154.8	0.7%
17	룩셈부르크	10.7	7.4	1,294.2	-17.6	118.5	17.3	4.5	310.6	14.5	15.5	1,775.6	0.6%
18	덴마크	163.0	259.9	148.8	174.0	72.8	56.5	141.0	26.8	190.1	107.9	1,340.8	0.4%
19	콜롬비아	307.1	61.0	106.4	100.2	113.9	213.1	73.8	-2.9	223.6	116.3	1,312.6	0.4%
20	스위스	56.4	251.1	300.0	115.0	-33.2	84.8	-40.1	161.7	84.2	248.7	1,228.8	0.4%
21	중국	38.3	102.8	54.9	100.7	52.9	68.6	203.5	260.5	134.3	189.2	1,205.7	0.4%
·	기타	2,600.4	2,761.9	2,927.1	1,992.9	664.4	897.8	1,046.4	1,065.8	744.0	1,198.5	15,899.2	4.9%
·	전 세계	25,574.0	21,744.7	48,216.4	30,473.7	35,487.4	31,149.3	34,232.7	33,921.3	34,243.9	27,785.7	322,829.3	100.0%

자료: 멕시코 경제부, 2021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북미 표준산업분류시스템(NAICS)에 따른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은 제조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누적 투자금액이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51.2%에 해당한다. 2020년만 놓고 보면, 제조업 부문에 106억 2,701만 달러가 투자됐는데, 2019년 46.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38.2%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다음으로 금융보험업(8.8%)과 도소매업(7.9%) 부문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 표 Ⅰ-4 | 2011~2020년 멕시코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부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31-33 제조업	11,613	9,720	31,250	18,874	17,802	18,028	15,451	15,702	15,990	10,627	165,059	51.1%
52 금융 및 보험업	2,725	-2,457	-321	4,824	3,286	3,469	2,660	2,397	5,494	6,480	28,556	8.8%
43 y 46 도매 및 소매업	2,718	2,812	1,445	1,953	2,647	1,920	3,113	2,881	3,238	2,295	25,022	7.8%
21 광업, 채석, 석유 및 가스 추출	915	2,911	5,745	2,679	1,602	930	1,380	1,639	1,920	1,342	21,063	6.5%
48 y 49 운수업	251	1,421	1,473	2,030	2,926	1,870	3,375	1,331	871	2,856	18,402	5.7%
23 건설업	1,677	1,566	1,182	978	2,272	1,243	3,123	1,789	348	465	14,643	4.5%
2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1,228	1,015	696	1,082	1,297	2,108	4,979	1,259	420	14,061	4.4%
72 숙박 및 음식점업	1,084	1,380	1,396	956	534	622	923	1,318	1,233	1,176	10,623	3.3%
51 정보서비스업	1,430	1,240	2,676	-3,921	2,309	949	613	1,126	1,802	1,241	9,466	2.9%
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9	689	596	650	339	434	561	319	1,229	358	6,314	2.0%
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9	821	927	237	376	151	237	168	468	329	4,515	1.4%
56행정지원, 폐기물처리·교정서비스업	730	209	489	191	-23	51	262	125	169	7	2,209	0.7%
1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136	145	211	178	178	100	141	-18	106	135	1,312	0.4%
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5	10	44	125	117	52	223	41	38	-25	740	0.2%
81 기타 서비스 (공공행정 제외)	228	3	60	20	1	23	22	55	64	64	540	0.2%
6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37	13	-1	16	12	10	7	21	17	156	0.0%
61 교육 서비스업	14	9	15	4	21	0	30	64	-7	-1	148	0.0%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기준, 자료: 멕시코 경제부

2.2 한국의 투자진출 동향

개요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어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4년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 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는 인구 1억 2천만 이상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시장 진출, 미국 · 캐나다 등 북미 시장 진출, 기타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누적 투자 신고금액은 74억 8,118만 달러이며 누적 투자금액은 62억 33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규모를 보면 제조업 투자금액이 31억 9,171만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조업 투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3사 및 현대기아 자동차와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멕시코 경제부 통계 기준으로 현지에 투자 설립된 한국 법인 수는 1,904여 개이나 이는 교민 기업 및 폐업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한국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전역에 약 424개사의 한국 기업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진출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관련 부품업체들이며 주로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 레온 등 국경 지역을 포함한 멕시코주가 위치해 있는 중부지역, 께레따로 지역에 분포해 있다.

| 표 Ⅰ-5 | 1980~2020년 한국의 연도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개사,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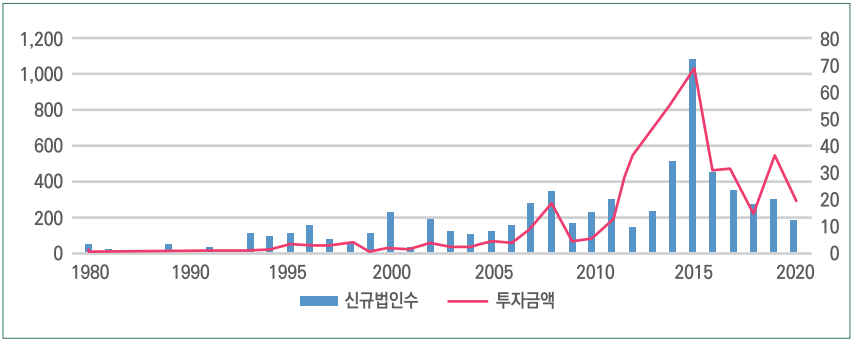

| 표 Ⅰ-6 | 1980~2020년 한국의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개사, US$ 천,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합계	438	6,203,301	100.0000
제조업	262	3,191,716	51.4519
광업	4	1,758,395	28.3461
도매 및 소매업	49	500,877	8.07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345,695	5.5728
금융 및 보험업	6	203,901	3.2870
정보통신업	9	100,841	1.6256
건설업	48	65,065	1.04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3,817	0.3218
운수 및 창고업	14	19,963	0.07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3,900	0.062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	3,497	0.0615
농업, 임업 및 어업	8	561	0.0564
숙박 및 음식점업	4	4,930	0.00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26	0.00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6	0.0003

| 표 Ⅰ-7 | 1980~2020년 한국의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 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개사, US$ 천, %)

제조업종 중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합계	262	3,191,716	10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4	2,011,548	63.024
1차 금속 제조업	7	302,796	9.48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7	228,901	7.17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172,570	5.40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151,097	4.734
전기장비 제조업	14	130,274	4.08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	83,829	2.6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3	54,885	1.7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12,500	0.3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8,915	0.345
기타 제품 제조업	15	11,023	0.279
식료품 제조업	7	4,830	0.23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7,563	0.210

제조업종 중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6,717	0.15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1,557	0.04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	95	0.026
가구 제조업	1	824	0.0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769	0.0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153	0.01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44	0.0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400	0.00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426	0.001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부문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요 투자 부문은 제조업(47%), 광업(30.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9.4%)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80.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6.2%)이 각각 비중을 차지했다.

| 표 Ⅰ-8 | 2020년 기준 업종별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동향

(단위: 개사, 건, 천 달러, %)

순위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액비중
1	제조업	8	68	144,039	47.3
2	광업	0	9	93,892	30.8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34	28,461	9.4
4	도매 및 소매업	1	5	25,101	8.2
5	건설업	2	6	1,140	0.4
6	운수 및 창고업	0	5	1,064	0.3
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2	4,400	1.4
8	정보통신업	0	0	0	0.0
9	숙박 및 음식점업	1	2	6,261	2.1
	합계	12	131	304,357	100.0
	누계(1980~2019)	438	7,481,181	2,48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유치제도

3.1. 외국인투자 지원정책

멕시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비 지원,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산세 등록 비용, 토지 이용세, 건축인허가 비용, 각종 인지대 감면 등이며 금융지원, 현금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매우 적거나 없다.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마다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 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중앙정부 인센티브

멕시코 연방정부에서 산업은행(Nafinsa)과 국영대외무역은행(Bancomext)의 신탁펀드를 통해 특별 특혜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융자금은 직접 또는 일반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며, 산업은행(Nafinsa)도 해외은행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은행(Nafinsa)의 기업 대출 중 약 80%는 중소기업 대출이며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안정, 생산력 증대, 지역개발, 국가기술 수준 향상 및 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Rule 8(Regla Octava)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원자재 등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경제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 인센티브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는 교육훈련비 지원,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수혜 범위를 협상,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심지어 정부 담당자에 따라 제공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문의 시, 문의

기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소규모 투자 진출 시에는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크지 않다. 이에 더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출서류가 많고 소요 기간이 길어 투자 타당성 검토 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투자 인세티브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수출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수출전문기업 등록 프로그램(ALTEX), 대외무역기업등록 프로그램(ECEX), 수출기업 수입세 환불 프로그램(Draw Back), Rule8(Regla Octava) 등이 있다.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재화를 임시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세(IGI), 부가가치세(IVA)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종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동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 소득세 20%와 부가가치세 8% 징수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지

❯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유효했지만, 북쪽국경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법령의 유효성을 202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바하캘리포니아, 치와와,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43개 지역이 해당한다.

주요 혜택은 부가가치세(VAT)를 16%에서 8%로 줄이고, 소득세 (ISR)를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가솔린에 대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EPS)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이 지역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시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빈곤한 남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를 포함한 22개 지역에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8%로, 소득세를 30%에서 20%로 감면 하는 것 외에도 일반 수입세 및 세관 절차법을 면제하고 있다.

3.3. 주요 산업단지

멕시코에는 150여 개 산업개발 공단업체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멕시코산업공단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 AMPIP)가 조직되어 있다. 동 협회는 산업단지의 부동산 정보 및 기타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투자자가 현지 방문을 요청하면 그 특성과 수요에 맞게 공단을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건물을 건설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고객 맞춤형 물류센터(Built to suit) 건설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멕시코 내 산업단지 정보 검색은 협회 홈페이지의 디렉토리를 이용하면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는 영어, 스페인어를 모두를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기에도 쉬운 편이다. (http://ampip.org.mx/en/) 주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다.

Parque Industrial Centro Logistico Jalisco

규모	1150ha
위치	Carretera Libre Acatlan de Juarez a Ciudad Guzman Km 11, Acatlan de Juarez, Jalisco
연락처	www.clj.mx +52-33-3615-6498 info@clj.mx

Millennium Industrial Park

규모	170ha
위치	Comisin Federal de Electricidad 800, Parque Industrial Millennium, Zona Industrial San Luis Potosi
연락처	www.argogrupo.com/argo_millenium/index.html +52-44-4804-4100 info@argogrupo.com

Arco 57 Industrial Park

규모	438ha
위치	Av 16 de Septiembre Km 2.1, Soyaniquilpan de Jurez, Estado de México 54280
연락처	www.frontierindustrial.mx/parque-industrial-arco-57-estado-de-mexico +52-77-1699-1785 industrial@artha.com.mx

Airport Technology Park

규모	100ha
위치	Av. Del Parque 2105, Airport Technology Park, 66655 Pesquera, N.L.
연락처	http://vynmsa.com/home/industrialParks +52-81-8356-7978

Advanced Puerto Interior Industrial Park

규모	40ha
위치	Mina de Calderones 200, Santa Fe III, Puerto Interior, C.P. 36275, Silao, Guanajuato
연락처	https://www.advance-realestate.com/ +01-800-427-0000 informes@advance-realestate.com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Ⅱ. 투자절차

1. 사전 조사
2. 투자진출 형태
3. 투자진출 방식
4. 철수

1. 사전 조사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국경을 벗어나 타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 제도나 문화 · 관습 · 언어 · 경제여건 · 산업발달 정도 등과 같은 투자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현지 정보 입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 국내투자보다 투자리스크가 더 높다. 따라서 해외투자 계획단계에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컨설팅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2013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책자(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공동 발간) 등을 참고하면 유용하다.

1.1. 투자타당성 조사

현지 투자 동향에 대한 정보는 코트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해외시장뉴스(www.news.kotra.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해외투자진출정보 포털(www.ois.go.kr)을 통해서 멕시코시티에 진출한 업체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다만, 멕시코 진출 업체 정보는 주소 및 담당자 변동이 잦으므로 정보수집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국내 또는 멕시코시티 무역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정보 수집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최적 입지조사 등 심층조사 단계는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업체들이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사전 조사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컨설팅, 법률, 회계 서비스 업체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특별히 우수업체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 업계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들을 열거한 것임.)

1.2. 현지 컨설팅, 법무법인, 회계사무소 (알파벳 순)

현지 컨설팅 업체 (알파벳 순)

A.T. Kearney

주소: Av. Santa Fe 481, Piso 18, Col. Santa Fe, CP 05349, México, DF.
담당자: Alejandro Martinez, contacto@atkearney.com
전화: +52-55-5089-9300
웹사이트: www.atkearney.com.mx

Bain & Company México, Inc.

주소: Paseo de Tamarindos 400A – 24, Bosques de las Lomas, CP 05120, México, DF.
담당자: Eduardo Hutt, eduardo.hutt@bain.com
전화: +52-55-5267-1700
웹사이트: www.bain.com.mx

Booz & Company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20 – 1704, Colonia Cuauhtémoc, CP 19850, México, DF.
담당자: Carlos Navarro
전화: +52-55-9178-4200
웹사이트: www.booz.com

Boston Consulting Group

주소: Paseo de Tamarindos 400 piso 18 A, Colonia Bosques de las Lomas, CP 2640, México, D.F
담당자: Eduardo León Martínez, leon.eduardo@bcg.com
전화: +52-55-5258-9999
웹사이트: www.bcg.com

Deloitte

주소: Paseo de la Reforma 489, piso 6, Colonia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Rafael García, rgarcia@deloittemx.com
전화: +52-55-5080-6000
웹사이트: www.deloitte.com

McKinsey & Company

주소: De la Reforma 505, Colonia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Torben Schmiedeknecht, torben_schmiedeknecht@mckinsey.com
전화: +52-55-5351-7700
웹사이트: www.mckinsey.com

Oliver Wyman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505, Colonia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Elisabeth Egan, elisabeth.egan@oliverwyman.com
전화: +52-55-1207-7450
웹사이트: www.oliverwyman.com

법률 사무소(로펌) (알파벳 순)

Basham, Ringe y Correa S.C.

주소: Paseo de los Tamarindos 400-A, 9 Floor, Col. Bosques de las Lomas, CP 05120, México, DF.
담당자: Martin Michaus Romero, basham@basham.com.mx
전화: +52-55-5261-0400
웹사이트: www.basham.com.mx

Berdeja Abogados

주소: Vasco de Quiroga 1900-2, Santa Fe, CP 01210, México, DF.
담당자: Teófilo Berdeja Prieto, tberdeja@berdeja.com.mx
전화: +52-55-5292-2730, fax: 5292-2740
웹사이트: www.berdeja.com.mx

Creel, García-Cuellar, Aiza y Enríquez

주소: Bosques de Ciruelos 304-2, Col. Bosques de las Lomas, CP 11700, México, DF.
담당자: Carlos Creel, carlos.creel@creel.mx
전화: +52-55-4748-0600
웹사이트: www.creelmx.com

González Calvillo y Forastieri, S.C.

주소: Montes Urales 632 Piso 3, Col. Lomas de Chapultepec, CP 11000, México, DF.
담당자: Enrique A. González Calvillo, egonzalez@gcf.com.mx
전화: +52-55-5202-7622
웹사이트: http://gcsc.com.mx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주소: Reforma 265, Col.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Julio flores, mailcentral@goodrichriquelme.com
전화: +52-55-5533-0040~55
웹사이트: http://goodrichriquelme.com

Heather & Heather, S.C.

주소: Torre Arcos-Piso 10, Paseo de los Tamarindos no. 400-B, Bosques de las Lomas, CP 05120, México, DF.
담당자: Thomas E. Heather, eheather@heather.com.mx
전화: +52-55-2167-9690
웹사이트: www.heather.com.mx

Jáuregui, Navarrete, Nader y Rojas, S.C.

주소: Paseo de los Tamarindos 400-B, Col. del Valle, CP 05120, México, DF.
담당자: Gabriel Navarrete Alcaraz, gna@jnnr.com.mx
전화: +52-55-5267-4500
웹사이트: www.jnabogados.com.mx

López Velarde, Heftye Abogados, S.C.

주소: Guillermo González Camarena #1600 Piso 6, Col. Centro de Ciudad Santa Fe, CP 01210, México, DF.
담당자: Alejandro López Velarde, alopezv@lvha.com.mx
전화: +52-55-5081-1424
웹사이트: www.lvha.com.mx

Santistevan Abogados, S.C.

주소: Homero 1804, Suite 902, Col. Polanco, CP 11570, México, DF.
담당자: Jorge G. Santistevan, jsantistevan@santistevan.com.mx
전화: +52-55-5557-1515
웹사이트: www.santistevan.com.mx

Von Wobeser y Sierra S.C.

주소: Guillermo González Camarena #1100 Piso 7, Col. Santa Fe, CP 01210, México, DF.
담당자: Claus Von Wobeser Hoepfner, vwyssc@vwys.com.mx
전화: +52-55-5258-1000
웹사이트: www.vonwobeserysierra.com

회계 사무소 (알파벳 순)

Dadoo & Asociados SA de CV

주소: Bosques de Duraznos 65, Piso 9 Desp. 908-B, Col. Bosques de las Lomas, CP 11700, México, DF.
담당자: Harish Dadoo, harish@dadooyasociados.com
전화: +52-55-5596-3456
웹사이트: www.dadooyasociados.com

Deloitte (Galaz, Yamazaki, Ruiz Urquiza, S.C.)

주소: Torre Mayor Reforma 489, Piso 6, Col.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Rafael García, rgarcia@deloittemx.com
전화: +52-55-5080
웹사이트: www.deloittemx.com

Ernst & Young

주소: Avenida Ejército Nacional 843-B, Col. Granada, CP 11520, México, DF.
담당자: Francisco Álvarez del Campo
전화: +52-55-5283-1300
웹사이트: www.ey.com

Gulesserian & Consultores

주소: Monte Líbano 235 Mezzanine, Col. Lomas de Chapultepec, CP 11000 México, DF.
담당자: Haig Gulesserian, haig@gulesserian.com.mx
전화: +52-55-5249-7130
웹사이트: www.gulesserian.com.mx

Howarth Castillo Miranda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505, Piso 31, Torre Mayor, Col.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담당자: Carlos Garza, cgarza@hicm.com.mx
전화: +52-55-8503-4200
웹사이트: www.hicm.com.mx

KPMG

주소: Blvd. Manuel Ávila Camacho 176, Col. Reforma Social, CP 11560, México DF.
담당자: Guillermo García Naranjo, garcia.guillermo@kpmg.com.mx
전화: +52-55-5246-8510
웹사이트: www.kpmg.com.mx

Price Waterhouse Coopers

주소: Mariano Escobedo 573, Col. Rincón del Bosque; CP 11580, México, DF.
담당자: Luis Gerardo Díaz Gutierrez, mpc.comunicacion@mx.pwcglobal.com
전화: +52-55-5263-6000
웹사이트: www.pwcglobal.com

2. 투자진출 형태

2.1. 단독투자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 만약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CNIE: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1)내국인 고용 및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2)기술적 기여 정보, 3)환경규제와의 일치 정보, 4)멕시코 국가경쟁력 및 생산력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동 위원회에 외국인투자 승인을 신청하고 45일이 지난 후에도 결정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45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승인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CNIE를 방문하여 승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동 위원회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승인받은 후에는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에 투자승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2.2. 합작투자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합작투자의 당사자들이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결합하여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며 이루어진다. 현지 파트너는 국내 시장에 밝고 대정부 관계, 법령 및 규제, 노동 시장에 정통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을 제공하고 선진기술, 경영 노하우, 수출경험 등을 강점으로 하여 효율적인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합작투자는 하나의 공동기업 설립으로 그 구성요소인 인적 요소와 자본적 요소 가운데서 그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적 공동기업, 혼합적 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멕시코에서의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변자본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으로 채용된다. 이는 자본의 유가증권화, 유한책임제도, 자본통합 가능, 이사회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회사 경영의 항구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브랜드 경쟁우위를 갖고 현지 시장에 밝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외식업그룹인 알시아(Alsea)와 2002년 합작투자로 멕시코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 알시아(Alsea)는 멕시코 내 합작회사의 스타벅스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한다. 그러나 한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합작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업체와 합작투자를 실시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한국 투자자가 언어, 문화, 신뢰도 등의 문제로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 진행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합작투자 사업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합작투자 파트너 간에 상호 불신과 불만이 상당히 높고 합작 투자자 간의 상호관계도 의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단 합작투자가 진행되면 현지 기업의 강점이었던 언어, 문화, 대정부관계, 노동문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도를 해외기업들이 빠르게 흡수하여 현지기업의 강점이 약해지기 쉽다. 그리고 실제 합작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영에 들어갈 경우에는 경영 방침 및 중대 관심사 등에 대한 시각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 자산 또는 기술 등에 대한 감정 평가의 문제, 기술제공 또는 이전에 대한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던 원천기술에서 파생된 새로운 응용기술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 사실상 합작투자가 진행되면서도 언제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합작투자 파트너 수배에서부터 합작투자 협상 단계에까지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의 경영을 맡은 임원들은 사실상 모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합작투자의 경우 경영절차, 분쟁 해결, 계약관계 종료 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다.

| 표 II-1 |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의 장단점

구분	단독투자	합작투자
장점	• 공장을 세울 때 투자규모에 알맞게 설비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지 인력을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 기술이전이 용이하다. • 생산라인 설치와 생산품목 선정에 유연성이 있다.	• 합작기업과 투자자금 및 각종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 합작파트너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현지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다. • 합작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 현지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점	•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유통망 신규구축 등으로 인해 투자기간이 길어진다.	• 합작파트너와 경영 전략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합작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장차 경쟁기업을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2.3. 인수합병

인수합병은 멕시코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식매입을 통한 방식과 자산매입을 통한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합병(Fusión)은 서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새로운 법인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합병기업 중 1개 기업만이 합병 후에 법률적으로 존속되는 형태인 흡수합병과, 2개 이상의 기업이 모두 해산, 소멸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해산된 기업의 법률적 지위(legal status)를 승계하는 신설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인수합병은 연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Citi Group의 경우 멕시코에 Citi Bank로 단독 투자 진출한 후, 미국의 본사가 멕시코의 Banamex은행을 인수하고 동 Banamex은행이 멕시코 Citi Bank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수합병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신고등록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49% 이상의 주식취득 제한 분야의 경우는 우선 경제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과 경제부와 외교부에 외국인투자 등록 및 신고 절차 등의 간단한 신고 절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내국민대우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자제한 비율은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인수합병 논의 및 잠정 결정

② 인수합병 교섭

③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④ 의향서(Letter of Intent) 작성

⑤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해당 업종의 경우

⑥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합병 관련 최종 결의

⑦ 인수합병 계약체결

⑧ 연방경쟁위원회에 신고 후 결정 기다림 – 해당 기업의 경우

⑨ 피인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⑩ 인수합병 종결(Cierre)

⑪ 재무부에 상업등기절차 마친 후 관보에 합병사실 공표

⑫ 인수합병 사후관리

3. 투자진출 방식

멕시코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방식은 크게 기존 주식의 취득에 따른 방식과 신주의 취득에 따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주식의 취득에 따른 방식이란 기존의 멕시코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주의 취득에 따른 방식이란 멕시코 회사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대우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투자보장협정(APPRI: Acuerdo de Promocion y Proteccion Reciproca de Inversiones)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형태

멕시코 회사법에 명시된 여섯 가지 법인형태 중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S. A.), 특히 가변자본주식회사(S. A. de C. V.)이다. 가변자본주식회사는 정관 변경 없이도 자본금의 신축적 증자 및 감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멕시코에 자회사를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 멕시코기업들 역시 유한책임회사(S. de R. L.)가 주식회사(S. A.)보다 유동적이고 제약이 적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이 정관 변경의 용이성과 미국 본국에서의 절세 목적을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 표 II-2 | 멕시코 회사법상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

구분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최소자본금	제한 없음 (통상 $5만 페소로 설립)	제한 없음 (통상 $3천 페소로 설립)
설립 정관	Acta Constitutiva	Contrato Social
증권 발행	주식 및 회사채	원칙적 발행 불가
감사 선임	필수	선택
발기인수	주주 최소 2명	출자자 최소 2명, 최대 50명
회사 경영	주주 혹은 제 3자가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 형태로 경영 가능	출자자 중 선임되어 경영

법인설립 시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 상호 3개 지정 (경제부에 상호신청)
- 2인 이상 주주 (주주 모두 개인·법인 혹인 외국인·한국인이어도 무관함)
- 주주들의 여권 및 비자 원본 및 사본
- 외국 법인이 주주로 출자할 경우 위임장, 정관, 사업자등록증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원본 및 사본
- 회사 주소지 증명서(Comprobante de Domicilio) 원본 및 사본
- 감사 1인 임명
- 현지 멕시코 1명을 비자 취득 시까지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
- 정관 작성 시 필요한 사항(영업목적, 주주, 각종 권한 및 직함, 주식, 참여비율 등)

현지법인 설립형태

멕시코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의거 대표적인 현지법인 설립형태는 합명회사(제2장), 합자회사(제3장), 유한책임회사(제4장), 주식회사(제5장), 주식합자회사, 협동조합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Capital Variables)회사로 설립될 수 있다(제1장 1조). 멕시코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멕시코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합명회사(S. N. C.)

합명회사(S. N. C.: Sociedad en Nombre Colectivo)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무한책임 성격으로 인하여 멕시코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합자회사(S. en C.)와 주식합자회사 (S. en C. por A.)

합자회사(S. en C.: Sociedad en Comandita Simple)는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do)과 유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rio)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실무를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사안에 대한 승인 및 감사 권한

은 보유한다. 주식합자회사(S. en C. por A.: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된다. 두 회사 모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 수가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동 회사 형태 또한 멕시코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S. de R. L)

회사의 출자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회사(S. de R. 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초기 출자 자본금 금액에 대해 제한은 없다. 대부분 관례적으로 3,000페소(약 300달러)로 설립하고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1페소)로 구성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유한책임회사에서 감사의 선임은 선택사항이며, 정관(Contrato Social)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출자자 또는 제3자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Consejo de Vigilancia)를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일 이내에 출자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출자자협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와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 승인은 참석자 지분율의 50% 찬성으로 가능하다.

출자자특별장부(Libro Especial de los Socios)를 작성하고 보유해야 한다. 특별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동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회사의 명칭과 사무실
- 회사의 정관상 자본금
- 구성원의 이름과 주소
- 구성원의 지분과 그 가치
- 자본금 납입증 번호와 발급일

회사경영을 위해서 1명 이상의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동 경영인은 출자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회사는 동 경영인과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도 있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어느 때라도 출자자총회 결의를 통해 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다.

출자자총회(Asamblea)는 모든 출자자가 참여하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일반적인 결정은 정관을 통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출자금액 50% 이상이 참석하여 그 중 1/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회 소집에서 총회 개회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소집한다. 2차 회의에는 개최정족수가 없으며, 참석자의 지분율 50%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출자자총회는 회사 주소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1년에 1번 이상 정관에서 정한 일시에 개최된다. 출자자총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연간 재무제표, 이윤에 대한 이용과 배당 계획, 회사의 손실을 처리하는 계획에 대한 승인
- 이윤 분배
- 경영자 선임·퇴임·해임
- 감사위원회(Consejo de Vigilancia) 구성 (필요시)
- 지분 분할 및 변제에 대한 의사 결정
- 보충 출자와 대여/차입에 관한 의사결정
- 회사 내 기관 혹은 출자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행사 관련 의사 결정
- 정관 개정
- 출자자의 탈퇴 및 신규 가입 동의
- 자본금 증자 및 감자 관련 의사결정
- 기업의 해산
- 기타 이 법과 회사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

주식회사(S. A.)

주식회사(S. A.: Sociedad Anónima)는 멕시코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 투자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로 가변자본 주식회사(S. A. de C. V.: Socieded Anónima de Capital Variable)의 형태를 선택한다. 가변자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증자 및 감자가 회사정관(Acta Constitutiva)에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럴 경우 특별한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자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외투자등록처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형태와 달리 회사법에서 절(Sección)을 따로 나누어 주식회사의 구성(la Constitución de la sociedad), 주식(las Acciones), 회사경영(la Administración de la Sociedad), 감사(la Vigilancia de la Sociedad), 재무정보(la Información financiera), 주주총회(las Asambleas de accionistas)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 1주 이상 보유한다. 최소 설립자본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5만 페소로 설정하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입되어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즉시 출자전액이 납입되어 2년간 회사가 보유한다. 이 기간 중 평가가치가 25% 이상 하락한 경우 출자자가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발기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회사는 수권자본금의 2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이익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주는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증자 시 출자우선권을 보유한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監事) 등 세 기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설립정관(Acta Constitutiva)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주주(출자자)의 성명, 국적, 주소지
- 영업목적, 회사 본점의 소재지, 상호 및 존속기간
- 출자금(자본) 총액 및 비율
- 주식의 총수, 액면 가액, 주식의 성격
- 출자 방식 및 기한
- 준비 적립금의 총액 및 이익금, 손실금의 처분 및 배분 방식
- 경영방식(대표이사·이사회)
- 감사 및 집행위원의 선임
- 해산사유, 청산 시 청산자 임명 및 청산절차
- 주주총회의 구성 및 역할, 결정의 유효 조건, 표결권 등

주식회사의 자본은 감자가 불가능한 고정자본금과 자유롭게 증자나 감자가 가능한 가변자본금으로 나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각 주식당 부여되는 권리 또한 동일하다. 즉, 1주당 1개의 투표권이 있다. 주식은 액면가액에 미달되도록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주식의 거래는 반드시 공인된 증권거래인(Corredor Público)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시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지명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인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1인 이상의 이사(Administrador)를 선임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특정 기한이 없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나,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주주 중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이사가 2인 이상 선임될 경우에는 이사회(Consejo de Administración)를 구성한다.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해임명령이 없는 한 종신직이며 이사회를 주재하고 표결 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경영인(Gerente)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지분의 25%(상장회사인 경우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외국인도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이사로 지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명된 이사의 거주지는 불문한다. 이사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주주들의 출자 실현
- 주주들에게 법에 따른 배당금 배분
- 회사 내의 회계, 내부관리, 등록, 서류 및 정보 유지 및 관리
- 주주총회 결의내용 수행

감사위원(Comisario)은 주주총회를 통해 1인 이상 선임된다. 그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 동 회사의 직원, 25% 이상을 출자한 타 기업의 직원, 동 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직원
- 경영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직계, 방계 4촌 이내, 인척 2촌 이내

또한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와 책임을 갖는다.

- 정관 및 내규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과의 합치여부 감사
- 매달 경영자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한 재무제표 감사
- 운영, 서류, 증빙 등의 관련 서류 확인
- 매년 이사회로부터 받을 자료를 토대로 주주총회에 감사결과 보고: 회계감사결과, 경영방침, 제출된 정보의 충실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할 수 있음

•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감사위원의 판단에 따른 중요사안 삽입 가능
• 주주총회의 소집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기 또는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 이사회에 참가하여 발언권 행사, 투표권은 없음
•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발언권 행사, 투표권은 없음
• 무제한적으로 회사 영업에 관한 조사권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매년 재무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 현 이사회의 회사운영 정책 및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등 회사운영현황 보고
• 운영 방침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보고
• 결산기에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상황 보고
•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상황변동표 보고
•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사용됐던 전표 등의 제출

상장된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승인 후 15일 이후에 감사결과와 함께 동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공공신문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여러 지역에 걸쳐 회사의 지점 등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공시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이든 임시총회이든 반드시 정관상 동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는 무효가 된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정기총회는 임시총회 논의 사안으로 규정된 안건 이외의 어떠한 안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회사의 결산기 이후 4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어느 때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통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은 개최일 최소 15일 전에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전자공고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de Publicaciones de Sociedades Mercantiles)을 통해 공시되어야 하며, 개최 날짜와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의안(la Orden del Día)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총회 의사록(Acta de Asamblea de Accionistas)에는 의안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과반수(의결주식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일반 주주총회는 의결주식 50%의 찬성으로 소집되나, 회사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특별 주주총회는 의결주식 75%의 찬성으로 소집된다. (단, 동일 안건에 대한 2차 주주총회 소집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 표 II-3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주요의제

정기총회 주요의제	임시총회 주요의제
• 이사회에서 제출한 회사관련 보고서 및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토의, 승인, 수정 • 이사,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의 선임 • 이사회 임원 및 감사위원의 급여 결정	• 회사의 영업기간 연장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 자본의 증자 및 감자 • 회사 목적의 변경 • 회사 국적의 변경 • 회사 형태의 변경 • 타 회사와의 합병 • 우선주의 발행 • 회사채의 발행 • 정관의 개정 •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자료: 멕시코 회사법

협동조합(S. C.)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회사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협동조합법(Ley de Sociedades Cooperativas)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외국인투자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 7조 1항에 조합이나 협회 설립 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협동조합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다.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외국인의 멕시코 진출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는 지점(지사)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있다. 현지법인이 멕시코 국내법에 의거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반해,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멕시코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경제부 외국인투자국(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 Extranjera)에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 외국법인은 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 회사정관과 기타 법인의 설립관련문서는 멕시코 법령에 명시된 공공질서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현지법인을 설립하든 지점을 설립하든 멕시코 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지점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투자진출을 꾀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다.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모기업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지점설립 결의안, 지점설립 대행 위임장 등의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받아야 하며, 멕시코 법원이 지정한 법정 통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한다. 설립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법인설립의 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 또한 법인에 비해 정부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부동산 소유제한과 각종 인센티브 수혜 면에서 법인설립에 비해 불리하다.

게다가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즉,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진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 표 II-4 | 현지법인과 지점의 특성 비교

구분	현지법인	지점
법적 지위	멕시코 내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멕시코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모든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국한됨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모든 법적 책임이 한국 본사에 귀속됨
설립 소요시간 및 비용	소요시간: 2개월 이내 변호사 비용:4,000~5,000달러 자본금: 제한 없음	소요시간: 2개월 이상 변호사 비용: 5,000~7,000달러 자본금: 필요 없음
활동 범위	모든 기업 활동 영위	이익을 수반하는 영업활동 영위 가능 현지인 고용 가능
납세 의무	있음	있음

3.1. 회사설립 절차

법인설립 시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절차는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1	설립요건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2명 이상, 통상 최소자본금 5만 페소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자 2명 이상 50명 이하, 통상 최소자본금 3,000 페소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회사명 사용 신청	• Tuempresa.gob.mx 홈페이지 통해 상호사용 허가신청	신청할 상호 수에는 제한 없음	경제부 회사국	2~3일 소요
4	상호 승인		공증사무실 혹은 대서사무실에 상호 승인서 전달 혹은 대행 위임	경제부	
5	정관 공증	〈 13개 필수 기재사항 〉 •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 및 법인의 이름, 국적 및 주소 • 회사의 목적 • 회사의 법적 형태 • 회사 존속기간 • 자본금 총액 • 투자자의 투자금액 및 투자형태, 현물투자일 경우 감정방법도 기재. 가변자본 회사일 경우 최소자본금액 명기 • 회사의 본점소재지 주소 • 경영진 구성 방법 및 경영 구조(1인 단독 경영 방식 및 이사회 구성방식) • 이사진의 지명 및 임명 • 투자자 간 이윤 및 손실 분배방식 • 적립금(준비금) 총액 • 회사 해산사유 • 청산방식 및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인 선출 방법	공증사무소에서 법인사업자등록까지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소 혹은 대서사무소	3~5일/ 공증 및 등기료 10,000페소 이상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6	법인납세자등록	• 납세자등록번호(RFC) 신청서 (R-1) • 회사정관 공증 사본 • 법인대표 신분증 원본 • 주소지영수증/공과금고지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비 • 세금계산서		국세청	2~3주/ 무료
7	부동산 및 상업 등기소 등기	• 회사정관 공증사본	자산 및 부동산 등기의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자산상업등기소	15일 소요/ 1,600페소
8	사회보험청(IMSS)에 법인 및 근로자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회사정관 공증사본 • 납세자등록증(RFC) 사본 • 법인대표 신분증 •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출생증명서 (Acta de Nacimiento)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새로운 근로자 채용 시, 5일 이내에 사회보험청에 등록해야 함 (오피스매니저와 같은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정규 근로자는 회사설립 시 등록해야 하며, 교체 시에도 변경신고 해야 함)	사회보험청	2~5일/ 무료
9	주정부 재무부에 지방세 등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납세자등록증(RFC) 번호 • 회사 우편번호	인터넷을 통해 등록 가능	주정부 재무부	1일/ 무료
10	시·군·구청에 회사설립신고	• 납세자등록증(RFC) 번호		시·군·구청	1일
11	멕시코시정부 재무부에 회사 급여세 (NOMINA)등록	• 납세자등록(RFC) 번호 • 회사 우편번호	멕시코시정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등록 가능	시 재무부	1일
12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에 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 인터넷 등록 가능 www.rnie.economia.gob.mx	법인설립 후 40일 이내에 등록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의 국가외국인투자 등록시스템(RNIE)	1일/ 인터넷 등록 무료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13	멕시코기업정보시스템 (SIEM) 등록	• 등록비용은 업종과 종업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지역관련업종 상공회의소	1일/ 최대 670페소
14	은행계좌 개설	• 회사정관 공증사본 • 납세자등록증(RFC) • 주소지 증명서/공과금 고지서 • 개설신청자 신분증		은행	1주일 소요
15	임대차 본계약		본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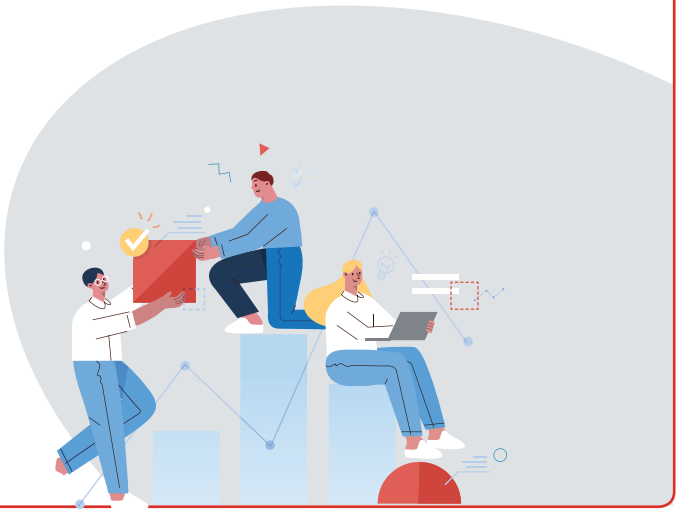

3.2. 지사설립 절차

일반적인 지사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1	설립요건	• 정관, 사업자등록증,지사설립 결의안,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서 원본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	공증사무소/ 외교통상부	
2	지사 설립 신고	• 지사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 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지사설립 관련조항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당일 신고접수
3	공증	• 지사설립 문서 공증		공증사무소	1주일/ 공증 및 등기료 20,000페소 이상
4	납세자 등록	• 납세자등록번호(RFC) 신청서 (R-1) • 지사설립 공증 사본 • 지사대표 신분증 원본 • 주소지영수증/공과금고지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비 세금계산서		국세청	2~3주/ 무료
5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에 지사설립 완료 신고	•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 인터넷 등록 가능 www.mie.economia.gob.mx	지사 설립 후 곧바로 신고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의 국가외국인투자등록시스템 (RNIE)	1일/ 인터넷 등록 무료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6	부동산 및 상업 등기소 등기	• 회사(지사)등록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지사설립 관련조항		자산상업등기소	15일/ 대략 1600 페소
7	멕시코기업정보시스템 (SIEM) 등록	• 등록비용은 업종과 종업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지역관련업종 상공회의소	1일/ 최대 670페소
8	사회보험청(IMSS)에 법인 및 근로자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회사정관 공증사본 • 납세자등록증(RFC) 사본 • 지사대표 신분증 •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출생증명서 (Acta de Nacimiento)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새로운 근로자 채용 시, 5일 이내에 사회보험청에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청	2~5일/ 무료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본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3.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앞서 본 지점설치와 거의 동일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1	설립요건	• 정관,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 설립 결의안,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서 원본	한국 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	공증사무소/ 외교통상부	
2	연락사무소 설립신고	• 연락사무소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 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연락사무소설립 관련조항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	당일 신고접수
3	공증	• 연락사무소 설립 문서 공증		공증사무소	1주일 공증 및 등기료 20,000페소 이상
4	납세자 등록	• 납세자등록번호(RFC) 신청서 (R-1) • 연락사무소 설립 공증 사본 • 연락사무소 대표 신분증 원본 • 주소지영수증/공과금고지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비 세금계산서		국세청	2~3주/ 무료
5	경제부 외국인투자국에 연락사무소 설립완료 신고	•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 인터넷 등록 가능 www.rnie.economia.gob.mx	지사 설립 후 곧바로 신고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의 국가외국인 투자등록시스템 (RNIE)	1일/ 인터넷 등록 무료
6	부동산 및 상업등기소 등기	• 회사(연락사무소)등록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조항		자산상업 등기소	15일/ 1,600페소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7	사회보험청 (IMSS)에 법인 및 근로자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회사정관 공증사본 • 납세자등록증(RFC) 사본 • 연락사무소대표 신분증 •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급여명부등록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청	2~5일/ 무료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본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 고려사항

- 자회사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나 지사에는 외국 법인임으로 해당되지 않음
- 법률적으로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법인격체이므로 지사에서 발생한 세금 또는 법률적인 문제는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함
- 1996년부터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에 경제부(SE)의 허가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사 설립관련 준비서류 제출 및 서류검토는 기존 허가제 때와 동일하게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3.4. 공장설립

멕시코 공장설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공장설립 절차	
1.멕시코 현지 법인설립	1) 부지를 매입할 주체인 멕시코 법인설립하기 2) 설립정관 공증 및 등기 3)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취득 4) 매입금 송금을 받기 위해 법인계좌 개설
2.회사대표 워킹비자 취득	1) 회사등록 2) 워킹비자 신청 3) 영사인터뷰승인번호 NUT 취득 및 영사인터뷰 4) 외국인등록증 카드비자 취득 * 공장 부지매입관련 공증매매계약서에 멕시코법인 대표자격으로 서명하기/법적권한 행사하기 위해 워킹비자 취득 필요
3.공장부지 매입	1) 공단 혹은 사유지 산업용 토지 조사 2) 지역별 주요공단 부지매입가 조사 및 주별 인센티브 사전조사 3) 부지매입지 선정 4) LOI 체결 시 계약금 (통상 10%) 지급, 대부분 멕시코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아 한국본사가 송금하고 차후 돌려받음 5) 해당 부지 분할 및 개별등기 절차 진행 6)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시 중도금 (통상 20~30%) 지급 7) 최종적으로 모든 서류 준비 후 멕시코 공증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관련 공증계약서 체결 시 나머지 잔금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 이때 해당 공증사무실에 공증료, 부동산 취득세, 각종 인허가 비용 및 등기료 전액 지급 8) 공증일 이후 2~3개월 후 등기사무소 등기완료된 부동산재산 등기부등본 수령
4.공장건설	1) 공장 레이아웃 작성 2) 건설사들 비교견적 요구 3) 건설사 선정 *공장 건설비 및 예상 공기는 최종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 *공장 건설관련 모든 인허가 취득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공장건설은 착공 후 6~10개월내 완공

자료: 법무법인 CHO & ASOCIADOS 정리

3.4.1. 부지 확보

외국인 토지관련 권리 범위

멕시코 헌법 27조에 따르면 멕시코 영토 내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의 것이며 국가는 개인에게 동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토지 소유권 부여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 취득 시 칼보 조항(Calvo Clause)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에서 규정한 제한지역(Zona Restringida)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고 있다.

제한지역은 남북 국경 100㎞ 이내 지역 및 해안 50㎞ 이내 지역으로 비거주 목적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가가 동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간은 50년으로 신탁자(내국인)의 요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비거주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일부 거주용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업
2. 신용기관, 금융중개업 및 신용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3.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4.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동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 또는 멕시코법인이나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에도 토지 임차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도 없다.

비거주 목적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외교부(SRE)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지역(Zona Restringida)의 정확한 위치는 통계청(INEGI) 웹사이트(www.inegi.gob.mx)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농지, 목초지 및 삼림지

외국인과 멕시코 국민은 농지, 목초지, 삼림지를 동 목적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규정들을 준수한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 농지의 경우 관개(Irragation)가 되는 토지는 10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면화 재배용 농지의 경우는 150㏊까지 소유 가능하며, 커피, 바나나, 카카오, 과수 재배용 농지의 경우 관개가 되는 토지 300㏊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가축사육용 개인목초지는 소와 말과 같은 대형 가축을 500마리 이상 사육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가 그 상한이다. 개인소유의 삼림지는 800㏊를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외국기업은 농지, 목초지 및 삼림지를 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멕시코 회사는 동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 가능한데, 그 상한 소유 면적은 개인에게 허용되는 토지 규모의 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멕시코 회사는 전체 소유면적에 맞는 지분 보유자 또는 동업자가 있어야 한다. 즉, 한 멕시코 업체가 2,500㏊의 관개가능 토지를 소유할 경우, 개인에게 허용되는 토지가 100㏊이므로 적어도 25명의 지분소유자 또는 동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지분 또는 주식을 T주식이라 부르며, 동 주식의 가치는 출자비율에 따른다. 외국인과 외국회사의 경우 T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고, 51%는 반드시 멕시코인이 소유해야 한다. 동 주식은 어떤 개인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인 소유한도 이상으로 매입할 수 없다. 단, 신탁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 표 II-5 | 부동산 구매 시 확인 사항

- **판매자가 실소유자인지 여부**
- **동 토지가 담보로 잡혀있는지 여부**
- **법률상 또는 이웃과의 계약에 의한 지역권(地役權) 설정 여부**
- **농업용지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 **수리권(水利權) 설정 여부**
- **토지에서의 독성물질 검출 여부**
- **현재 토지형질의 토지이용 목적과의 부합 여부**
- **현 토지소유자의 이전 5년간 부동산 보유세 및 관련 공과금 납부 여부**

자료: 법무법인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등기 및 외국인의 행위 능력

부동산 구입 이후 공증사무소를 통해 등기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각 시, 군, 구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관광객을 포함한 멕시코 주재 외국인이 제한구역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광물 또는 수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허가를 얻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자법〉 제10-A항에 따라, 외교부(SRE)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은 허가비용이 무료이며 근무일 기준 2일이 소요된다. 광물 또는 수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허가는 심사비 455페소와 허가증 발급비 8,020페소를 납부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2일이다. 멕시코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인 및 감정평가인

멕시코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부동산중개인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멕시코에는 소노라(Sonora)주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중개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등의 자격제한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후에 책임을 묻거나 중개료 등을 환불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현재 멕시코에는 멕시코부동산중개인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Profesionales Inmobiliarios; AMPI)가 있어 부동산중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고, 협회 내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가 아닌 중개인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부동산 감정은 토지 구입 및 세금 납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평가인은 토지의 공식 가격 산정 및 가격을 바탕으로 부동산취득세 등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은행에 소속되거나 은행과 제휴하여 활동한다.

〈공장부지 평가 서비스 업체 (멕시코시티 소재)〉 (무순)

Corporación Mexicana de Valuación
(주소) María de la Luz Bringas no. 28, Colonia Actipan, Benito Juárez, C.P. 03230, México, D.F.
(Tel) (52-55) 5661-1500
(웹사이트) www.avaluos.com.mx

Corporación Internacional de Avalúos
(주소) Schubert 139, Colonia Peralvillo, C.P. 06220, México, D.F.
(Tel) (52-55) 5597-3331
(웹사이트) www.valuacion.com.m

AM Ingeniería y Avalúos de México
(주소) Avenida Insurgentes Sur 105, Piso 14, Colonia Juárez, Edificio El Greco, C.P. 06600, México, D.F.
(Tel) (52-55) 3089-3845
(웹사이트) www.amdemexico.com.mx

Grupo GM Valuación Integral

(주소) Monte Elbruz 124, Piso 2, Oficina 212, Colonia Palmitas Polanco, C.P. 11560, México, D.F.
(Tel) (52-55) 3089-3845
(웹사이트) www.gmvaluacion.com.mx

Grupo AM Valuadores y Avalúos México.

(주소) Av. Vasco de Quiroga 3900, Piso 10, Santa Fe, Corporativo Diamante, Edificio A, C.P. 01219, México, D.F.
(Tel) (52-55) 3089-5089
(웹사이트) www.grupoamvaluadores.com.mx

TINSA Internacional.

(주소) Paseo de la Reforma 373, Cuauhtémoc, CP 06500, México, D.F.
(Tel) (52-55) 5080-9090
(웹사이트) www.tinsamexico.mx

토지 구분

멕시코의 토지는 연방, 주, 시, 군, 구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 · 군 · 구에서 토지용도 및 시설건축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토지사용허가와 시설건축허가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지의 경우, 영업허가, 건축허가, 토지사용허가 및 연방정부의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소유 유형별 구분

멕시코의 토지는 크게 국유지(Public), 공유지(Social), 사유지(Private)로 구분할 수 있다. 국유지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정부서비스와 그 목적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공유지란 연방정부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토지의 사용 및 소유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농지공동경작제도인 에히도(Ejido)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토지/부동산 구매 허가 및 신고

외국인의 경우, 멕시코에서 토지/부동산 구매를 위해서는 먼저 외교부로부터 부동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비용은 무료이다.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2일이다. 그 후 각 취득예정지에 따라 각 시, 군, 구 등기소에서 부동산을 등록한다. 제한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토지 구입 60일 내에 외교부 인허가국 신고하고, 신탁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세

멕시코의 부동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25~28%이다.

부동산 취득세

개인 또는 기업이 멕시코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2~3.7%이며 각 주별로 다르다. 부동산 취득세는 구입 이외에 판매계약, 기부, 신탁, 기업합병, 자회사설립 및 부동산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의 구매자에게 부과되며, 건물의 가격에 세금 및 공과금, 이자, 각종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6%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떤 용도로든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어떤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위 기준가에서 주거용 부분의 시가를 제외한 가격을 부가세 부과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부동산 구매 시 확인사항

부동산 구매 시 공장부지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 관련 매도인 및 건설사 법적 존재 여부, 실제 부동산의 소유주 여부, 계약서 서명자의 법적권한 보유여부, 또한 매입 부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표 II-6 | 부동산 구매 시 실 소유주 확인 및 검토해야 할 서류 리스트

- 회사정관/ACTA CONSTITUTIVA
- 회사대표자/계약서 서명자 위임장/PODER NOTARIAL
- 사업자등록증/RFC
- 주소지영수증/COMPROBANTE DE DOMICILIO
- 회사대표자/계약서 서명자 공식신분증/CREDENCIAL DE IFE
- 부지/부동산 소유주 등기부 등본/ESCRITURA DE PROPIEDAD REGISTRADO ANTE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 토지용도 증명서/EL USO DE SUELO DE NAVE INDUSTRIAL
- 최근 재산세 납부 영수증/BOLETA PREDIAL RECIENTE
- 근저당 비 설정 증명서/CERTIFICADO DE LIBERTAD DE GRAVAMEN (담보 나 압류 등 근저당 설정유무를 확인하는 문서)
- 공단내부규정/EL REGLAMENTO DE PARQUE INDUSTRIAL MILLENIUM (공단인 경우만 해당)

자료: 법무법인 CHO & ASOCIADOS 정리

부동산 매매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1) 멕시코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1차적으로 부지매매계약약정서/서약서를 체결하고 총 매입금의 일정부분 (통상 10~30%)을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차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매매계약서 및 기타 등기를 위한 서류준비가 다 완료되면 최종 공증매매계약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당일 부지매입 대금 잔액과 공증료, 부동산 취득세, 각종 등록관련 실비 등을 지급한다.

2) 부동산 매입관련 부동산 취득세, 매매계약서 공증수수료 및 기타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각종 등기사무소 신고 및 허가관련 각종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만 납부한다.

3.4.2. 구입 또는 임차 계약

멕시코에선 실제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구입 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축 시 동반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설치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리며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공장 구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토지 구매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장의 소유권여부, 저당권 설정여부, 인프라 설치여부, 도로 통행 가능여부, 건물 재료 및 건물 구조가 동 업체와 부합하는지 여부, 소방 설비 보유 및 작동여부, 시설보안 관리 등이 있다.

임차의 경우 주로 산업단지를 통해 임차가 이루어진다 (멕시코산업공단협회(AMPIP) 관련 사항은 앞 장(I. 투자환경) "3.3. 주요 산업단지" P.20 참고)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은 멕시코에서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균 70일 내외의 시일이 소요된다. 아래는 멕시코시티에서의 절차 및 수수료 내용이다.

| 표 II-7 | 부동산 등기 절차

순서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페소)
1	*상수도요금 완납사실 확인서 발급	15일	140
2	*부동산 구역설정 증명서 발급	13일	140
3	*과징금 미납여부 사실 확인서 발급	12일	1,296
4	*판매자의 토지세 완납 사실 확인서 발급	7일	524~1,048
5	*부동산 시세 감정 신청	7일	3,000~5,000
6	공증서면계약서 준비 및 작성, 부동산 양도세 또는 소유권이전세 공제 및 납부	3일	변동적
7	부동산등기소에 공증서면계약서 등록	30~90일	13,293

* 타 절차와 함께 진행가능 함.

3.4.3. 건축절차

한국 업체가 입주한 상당수의 공장의 경우, 정식 공단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공장을 건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각 주별로 법령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설립의 경우, 규모, 입지 여건 등에 따라 그 절차의 기본적 틀은 비슷해도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공장설립의 예는 멕시코시티의 고용인원 10-50인 규모의 설비에 대한 설립 절차이며,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미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별다른 지연요소 및 추가 소요비용 발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동 시간과 비용을 최소기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 표 II-8 | 인허가 관련 공장설립 절차

순서	절차	소요시간	비용(페소)
1	건축허가신청번호 증명 및 건축선 허가 획득	11일	1,080
2	토지이용가능성소견서 취득	12일	1,296
3*	건축등록 (B형)	12일	-
4	상하수도 신청 및 연결	1일	788,549
5*	전화서비스 신청 및 연결	1일	1,300
6	구청에 준공 신고	1일	-
7	준공 검사	6일	-
8	준공확인서 획득	7일	-
9	사회보호허가 신청 및 취득	30일	-
10	구청 토지대장에 공사내용 갱신	1일	-

* 타 절차와 함께 진행가능

자료: Doing Business en México 세계은행, 2014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설사(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설계약을 한다. 공장건축을 위해 건설사선정 시 아래 기본적인 회사 법률서류 및 회사대표 서명자 권한행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회사정관/ACTA CONSTITUTIVA
- 회사대표자/계약서 서명자 공증위임장/PODER NOTARIAL
- 사업자등록증/RFC
- 주소지영수증/COMPROBANTE DE DOMICILIO
- 회사대표자/계약서 서명자 공식신분증/CREDENCIAL DE IFE

건축허가신청번호 증명 및 건축선 허가 획득

• 기간: 15일
• 비용: 1,080페소(건축물 전면 길이 22.5m일 경우)
• 세부 내용
  – 해당 증명 및 허가 발급 담당기관은 구청 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Delegacional), 도시개발 주택부(Secretarí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멕시코시정부(Gobierno del Distrito Federal)로 신청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함.
  – 멕시코시 정부는 공공도로에 접한 건축부지에 대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신청번호를 할당함. 건축선은 건축부지와 공공도로의 경계 및 특징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토지사용허가 절차에 필요함.
  – 제출 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신청서
    토지세 납부영수증
    토지소유등기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신청수수료는 신청 당일 납부함. 신청번호 증명과 건축선 허가는 신청 후 일반적으로 3~4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동 신청번호 증명과 건축선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허가를 득한 이후 2년 내에 건축이 개시되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신청해 번호를 발급받고 건축선을 지정받아야 함. 신청수수료는 주법 형태로 책정됨. 멕시코시티의 경우, 멕시코시티 재무법(Código Financiero del DF, Articulo 255)에서 규정함. 신청번호 증명 수수료는 142페소이고, 건축선 허가 수수료는 미터당 23페소임. 처리결과의 통보기한은 통상 8일이나, 2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토지이용가능성 소견서 취득

• 기간: 20일
• 비용: 1,296페소
• 세부 내용
동 절차를 통해 기업은 건축에 요구되는 토지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를 취득함. 동 소견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전문의견을 반영하며 상하수도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정함. 이 절차는 상수도서비스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 수수료는 주법 형태로 책정됨. 멕시코시티의 경우 멕시코

시티 재무법(Código Financiero del DF, Articulo 257)에서 규정함. 처리결과 표준통보기한은 3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5일 정도 소요된다.

건축등록 (B형)

• 기간: 1일
• 비용: 39만 4,852페소(건축면적 1300.6㎡의 경우)
• 세부 내용
- B형 건축은 5,000㎡ 초과의 비거주용도 또는 혼합용도 건축물(5,000~10,000㎡) 또는 1만㎡ 초과의 특정 위험지역 단일가족 거주용도 또는 개발용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절차임.
-제출 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등록번호 증명서 및 건축선 허가서
토지이용가능성 소견서
건축도면 사본 4부: 건축주, 건축책임감독(DRO) 및 구조안전, 설비, 도시건축설계 공동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자재, 마감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함.
프로젝트 설명서
견적서
건축책임감독 및 구조안전, 설비, 도시건축설계 공동책임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구조설계 사본 2부: 건축책임감독 및 구조안전 공동책임자의 서명을 포함해야 함.
상하수도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상수도관 설치 및 하수도관 연결이 필요하므로 필수요건임.
- 등록절차를 마치면 단일창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멕시코시티 행정검토규정(Reglamento de Verificación Administrativa)에 따라 검토하고 건축과정을 확인함.
- 건축책임감독(DRO)은 공공도로에서 보이고 읽을 수 있는 곳에 건축등록번호와 건축 관련 일반정보 및 건축등록위치와 유효기간 등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할 책임이 있음.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건축면적	건축허가 유효기간
300㎡ 미만	1년
300~1,000㎡	2년
1,000㎡ 초과	3년

- 수수료는 주법을 통해 책정되며, 2013년 멕시코시티의 경우 62/m²임.
- 건축을 개시하기 전에 멕시코시티 상하수도시스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04년 중반부터 온라인 통보 가능).
- 상수도 연결 비용은 상수관, 계기반, 계량기의 설치비용을 포함하며, B형 건축허가 양식을 통해 함께 납부함. 금액은 멕시코시티 재무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상수관 설치: 1만 1,490페소
  하수관 설치: 7,780페소
  계량기 설치: 5,765페소
  계기반: 1,206페소
  이용가능성 조사: 3만 2,931페소
  연결비: 1,000페소
  보강공사: 25만 3,617페소(195페소/㎡)
  총계: 31만 3,789페소

상하수도 신청 및 연결

- 기간: 30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추가공사를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하수도 연결은 약 2주 안에 실현될 수 있음. 멕시코시티 물관리시스템 출장소에서 건축주가 건축물과 상하수도망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한다.

전화서비스 신청 및 연결

- 기간: 4일
- 비용: 1,300페소(Telmex 기준)
- 상세 내용
  - 전화의 경우 민영화 이후 Telmex, Axtel, Maxcom 등의 업체가 활동함. Telmex에서 상업용 전화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가 1,299.5페소임.
  - 전화라인은 Telmex 사무소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지불할 수 있다.

구청에 준공 신고

- 기간: 1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준공신고는 전기 연결이 완료되면 서면을 통해 함. 준공신고가 이뤄지면, 1주일 이내에 준공 검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준공 검사

- 기간: 1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후 정해진다.

준공확인서 획득

- 기한: 6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준공확인서는 구청 단일창구에서 발급된다.

사회보호허가 신청 및 취득

- 기한: 7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사회보호부의 검사는 복잡한 구조의 건물에 필요. 일단 신청과 비상계획이 완료되면 사회보호 당국에서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청 토지대장에 공사내용 갱신

- 기한: 1일
- 비용: 없음
- 세부 내용
  - 건축물의 가치를 갱신하기 위한 기간 및 비용은 멕시코시티 재무법 제217조에 따른다.
  - 이 절차 후에 등기사무소에 건축물을 등록한다.
  - 준공 후, 대장가액의 갱신 신청은 재무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함이다.
  - 새로운 기록 정보는 오직 건축물을 포함해 토지가 판매되는 경우에만 갱신된다.
  - 멕시코에서 토지소유주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된다.
  - 건축물은 오직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만 등록된다.
  - 등기사무소는 조직개혁을 통해 등록에 필요한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감소시켰다.

〈 공장 건설시 확인 사항 〉

- **시, 군, 구청에서 건축허가 획득**
- **건축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기금 납부 확인**
- **건축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완료여부 확인**
- **건축 시 소요된 자재비용 납부 완료여부 확인**
- **시, 군, 구청으로부터 설계도면 원본에 대한 인증 획득**
- **시, 군,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
- **담당 건축사의 시, 군, 구청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서명**
- **건축 노동자와 관련된 진행 소송 유무 및 진행상황 확인**

4. 철수

4.1. 개요

투자환경이 변화하거나 투자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사업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의 철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건이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투자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절차가 느리고 복잡한 편이다. 철수의 방법에는 청산, 파산, 휴면, 지분양도, 합병 등이 있다. 이 중 지분양도 및 합병은 '인수합병' 편에서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4.2. 철수 방법 및 절차

4.2.1. 방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4.2.1.1. 청산

정의

청산(Liquidación)이란 회사 등의 법인·조합이 해산(Disolución)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이행 그리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를 동업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소멸 절차를 말한다. 기업청산은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산사유(회사법 제229조)

-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졌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을 때
- 모든 동업자(투자자) 또는 주주들이 해산에 동의했을 때
- 주주의 인원이 법에 규정된 최소인원 이하가 되거나 모든 이익이 단 한 명에게 집중됐을 때
- 자본의 2/3 이상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자발적 청산은 동업자 또는 공동투자자 간의 합의로 시작된다. 동 합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명문화되어야 한다. 총회 후 청산인(Liquidador)을 지명하고, 청산인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를 대신해 이후의 회사 청산을 총괄한다. 청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 지명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서 동 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 청산 관련 총회 이후 한 번의 청산결의에 대한 총회가 더 개최되어야 하는데, 동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배분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 해산결의안(Acta de disolución)의 공증 및 등기
- 공증사무소(Notario Público)나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해산결의안을 공증받고 상업등기소에 등기
- 멕시코 회사법에 따라 청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기업 청산을 담당할 청산인을 임명함
-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서소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sat.gob.mx)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재무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edito Público)에 해산 신고
- 국세청에 해산 신고를 하고 나면 매월 잠정 신고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 납부함

3) 청산인의 청산 작업 및 재무제표(El Estado de Situación Financiera) 작성
- 청산인은 기업의 동산 · 부동산 자산처분, 채권징수, 채무변제, 재고물품처분, 직원 퇴직금정산, 사회보장원에 납부금 정산,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해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업무를 수행함

4)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 (Aviso en el Sistema Electrónico establecido por la Secretaria de Economía)을 통해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 채권자들이나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당 회사가 청산 과정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연방관보 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에 공고함

5) 주주총회 최종청산결의안(Acta de Liquidación Total)의 공증 및 등기

6) 재무부(SHCP)에 기업 자산처분내역 신고

- 청산인은 연방세법(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에 처분내역을 국세청(SAT)의 납세자 등록부(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에 신고해야 함
- R-2서류와 함께 공증된 자산처분 내역서를 재무부에 제출
-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일체를 납부해야 함

7) 재무부(SHCP)에 기업 최종청산결의안(Acta de Liquidación) 통지 및 납세자등록(R.F.C.) 취소 신청

- 기업청산 통보를 위해 납세자 등록을 했던 재무부(SHCP)에 양식(R-2)과 함께 기업청산서류(Acta de Liquidacion)를 제출함. 수수료는 없음
- R-2 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각 지역 재무부 사무소 위치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 단계를 마치면, 재무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나 청산 이후라도 청산인은 기업의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함

8) 경제부(SE)에서 외국인투자 등록 취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작성했던 서류 중 첫 페이지(caratula) 및 등록취소 서류부분(modulo)을 경제부 외국인투자등록부서(Registro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에 제출
- 첫 페이지 및 등록취소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9)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문의

- 외교부(SRE)의 사사국(Dirección General de Inspección Federal del Trabajo)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수수료는 없으며, 월~금 9:00~13:00, 15:00~18:00에 상담 가능
- 주소: Carretera Picacho - Ajusco Km. 1.5 No. 714, Col. Torres de Padierna, C.P. 14209
- Tel: (52 55) 5644.1000 ext. 2945 y 2948

청산인(Liquidador)의 권한

멕시코 상업회사일반법 제242조에서는 청산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함.

가. 해산 당시 진행 중인 회사활동의 종결

나. 회사의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다. 회사 재산 매각

라.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각 투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산

마. 투자자 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 재무제표 작성. 승인된 최종 재무제표는 상업등기소에 제출

바. 청산 최종절차로서 상업등기소에서 정관 등록 취소

세금관련

법인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납부와 관련, 청산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산인은 회계연도 최종정산 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이 되는 달 17일까지 잠정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세청(SAT)의 납세자등록(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을 취소해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주주의 투자금 변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금에도 또한 과세하지 않는다. 청산인은 세금 납부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단, 청산인이 모르게 회사에서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회계 자료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공동책임에서 면제된다.

노동관련

청산인은 동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중재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단체협약과 노동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동 계약의 종료는 더 이상의 사업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정당화되며 그 사유는 연방노동법 제53조의 공사종료, 기간 만료 또는 자본 투자의 종결을 들 수 있으며, 제434조에 따라 합법적인 파산이 선포되고, 당국 및 채권단이 회사의 폐쇄 또는 감원을 결정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조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상 법에서 규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을 때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불가능 퇴직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만약 노조 측에서 동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기본급여(Salario)에 복리후생(Prestación) 및 성과급(Comisión)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4.2.1.2. 파산

정의

파산(Quiebra)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잔여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의 채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멕시코 파산시스템에 대한 우려

파산시스템 가동의 근본 목적 중 하나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업종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회사도 몇 년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복잡한 파산절차를 밟느라 자본이나 인적자원이 생산성 있는 분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

파산 관련법의 약점으로 인해 파산의 절차적,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고 실제 채권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파산의 문제는 채권회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따르면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채권 회수율은 평균 63.9% 정도로 나타났다.

파산관련 법령

멕시코의 파산관련 법령은 2000년부터 파산및지불유예법(Ley de Quiebras y Suspencion de Pagos)에서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으로 대체됐다. 이전 파산법에서는 주 법원에서 파산관련 우선 사법관할권을 보유했으며, 관련협회의 참여도 인정됐으나, 현재는 연방사법부(Poder Judicial Federal)에 소속된 지방법원(Juzgado de Distrito)에서 담당하며, 관련협회의 참여는 거부됐다.

동 법의 개정은 파산과 관련된 소송의 신속성 확보 및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동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아. 파산 절차에 있어서 기한 및 결과에 대한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
자. 법적 소송으로 인한 파산절차 지체 방지
차. 법적 소송 관련 사안과 행정, 무역, 재무 관련 사안의 분리
카. 2개 국가 이상이 관련된 파산절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강화

동 법은 상업 및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는 법적주체에게 해당되며, 또한 외국기업의 멕시코 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요건

타. 상업적 채무자의 존재

파. 복수의 채권자(채무자 파산신청 시)

하. 채무이행의 총체적 불능상황

만기일이 최소 30일 이상 지체되며 최소한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불능이거나, 파산신청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35%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의 보유 유동자산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의 80% 초과할 때

2) 관할법원

사법관할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이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소송의 성격상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동시 관할하는 경우에는 주법원에서 동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3) 일반적 절차

기업 파산은 연방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에 상업경매·파산선고 신청서(La Solicitud de concurso mercantil)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동 신청서는 파산하려는 기업(채무자) 또는 1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일 경우 조정과정 없이 바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채권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동 법원에서 실사관(Visitador)과 조정관(Conciliador)를 임명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고 동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무서류를 준비해 멕시코사회보험청(IMSS), 거래은행, 재무부(SHCP)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동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할 시에는 탈세 및 사기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4) 법정파산전문가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에서는 파산절차상 상업, 행정, 재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법원에서 임명한다. 동 전문가들은 연방 파산관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 법에서는 동 전문가들을 활동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실사관(Visitador): 파산선고 이전까지
나. 조정관(Conciliador): 조정기간 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조정 임무
다. 파산관재인(Síndico):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의무이행여부 관리

5) 조정단계(Conciliación)

법정조정기간은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이 마지막으로 공고된 날 이후 185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조정관 또는 채권의 2/3를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90일 연장 가능하며, 이후 채무자 혹은 90%의 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9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조정기간은 360일을 넘을 수 없다. 동 기간 동안 조정관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합의를 유도한다. 만약 조정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조정관은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및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담당하며 채무자에게 채권가액인정 신청을 받는다. 동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채권가액을 승인하고 채권의 등급을 정한 후 채권변제 순서를 결정한다.

우선변제대상 채권자들이 조정과정에 참여하려면 이미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을 조정관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면 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들은 조정결과에 따를 의무를 지니며,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동 채무이행불능 관련 소송이 종료된다. 그러나 조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6) 파산선고 후 처리단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조정관을 대체하며, 채무자는 사업 및 자산의 경영권 및 관리권을 상실한다.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의 환가 및 배당가능 자산이 없을 때,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을 때 파산절차는 종료된다.

7) 노동 관련

파산은 연방노동법(Ley Fedral del Trabajo) 제434조에 규정된 근로계약 종결사유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 관련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기보

다는 노동조정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ón y Arbitraje)를 통해서 가압류를 통한 임금채권 지급 및 채권단 조정과정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조정 및 파산 선고 후, 처리단계에 참여해 채권의 비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이를 배당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8) 파산관련 소송의 국제화

멕시코 파산법(Lay de Concursos Mercantiles)에서는 2000년 제정 당시 파산소송의 국제공조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포함했다. 만약 파산관련 소송이 2개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관할권 및 법정대리인의 대표 적격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파산법에서는 2000년 제정 당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정한 국제채무불능관련모델법(Model Law on Transborder Insolvency)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채무관련 소송은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관할권을 보유 및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파산관재인이 멕시코 법원에서 법적 행위자격 및 소송자격을 보유하며, 멕시코 내에 주재하는 채무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델법에 규정된 대로, 멕시코 전문가들(실사관, 조정관, 파산관재인)도 또한 외국의 파산관련 법정에서 동일한 법적 자격을 인정받는다.

4.2.1.3. 휴면

철수절차가 복잡하고 청산 등을 통해 과세부담이 있을 경우 휴면(Suspension de Actividades)회사로 투자회사를 일정기간 존속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기한 휴면은 불가하다. 멕시코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선 회사의 정관 작성 시 영업지속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기간의 연장은 특별주주총회를 통해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휴면을 통한 철수 시 오래전부터 회사의 규모를 축소해나가며 과실을 회수해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휴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SAT)에 밀린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법적대리인이 회사정관과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출두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휴면신청서(Formato R-2)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2년 간 휴면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1년 1회에 한해 휴면 연장이 가능하다.

4.2.2. 재산 처분 및 청산금 회수

재산의 처분은 청산 시에는 동산일 경우 이를 판매해 현금화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파산 선고가 난 후에는 채무자는 이미 재산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하기 때문에 파산업체는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조정기간에는 채무자가 처분권을 보유한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산금의 회수는 대부분 채권회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바이어들이 투자기업의 청산의사를 알게 되면 채무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채무거래 시 담보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Ⅲ. 현지경영관리

1.노무관리
2. 세무회계관리
3. 지적재산권
4..ESG 경영활용방안

1. 노무관리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 대부분에게 현지 경영관리 중 노무관리가 애로사항 중 가장 어려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는 다른 언어, 노동 문화 그리고 노동법 규제로 인해 현지인들을 직접 채용하여 노무관리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현지 노동문화를 이해하고 노동법 상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멕시코 노동법은 한국 노동법과는 달리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치게 근로자들의 권익을 편중하여 보호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상하 · 수직관계에 의거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보장받기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얻은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런 노동법규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불합리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 정치적 · 시대적 요구가 계속 있었고 결국 2012년 12월 1일부로 25%에 가까운 노동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들이 도입됐다고는 하나, 전통적으로 노동자중심 성향이 강하므로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해 노동관련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근로자 파견

개요

파견 인력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업무에만 근무자를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대로 역할을 분담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한다. 일단 근무자 파견계획이 수립되면 파견 인력을 미리 선정해 업무 및 어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해 대상자를 찾다 보면 적임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선정된 근무자가 현지에 부임해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파견 대상자가 결정되면 파견될 국가의 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근무자 파견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회사(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노동법 및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상 외국인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 수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파견 근무자가 매니저급 이상의 고위직인 경우 본 규정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비자의 취득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는 근무자 파견에 대

해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단순 관광, 여행, 휴가, 방문, 단순 비즈니스, 회의 참가,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입국 시 무비자(관광비자: FMM)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파견의 경우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180일 이상 파견의 경우라도 우선 무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이 가능한 단기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11월 9일자로 개정 · 발효된 멕시코 이민법시행령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체류목적이 무비자 대상이 아닌 경우, 필히 출국 전에 거주국 주재 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서 체류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비자에서 취업이 가능한 단기거주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정신이상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나, 멕시코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할 경우, 멕시코에 있는 부모 등을 돌볼 사람이 없어 본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인 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멕시코의 취업 관련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채용 · 고용 · 근로 비자로, 멕시코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해당 멕시코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파견 · 주재원 · 상용 · 기술 비자로, 멕시코 정부에 등록된 멕시코 현지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한국의 원소속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두 종류의 비자 모두 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 체류를 위한 단기거주비자(Visa para Residente Temporal)이며,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1년, 2년, 3년, 4년 만기로 연장할 수 있다.

멕시코법인 취업 관련 워킹비자 취득

워킹비자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설명	담당기관
1	비자허가 신청	1. 멕시코 소재 고용자 · 고용업체에서 멕시코 이민청과 사전 진행 2.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정도 소요	멕시코 이민청
2	비자허가서 NUT(처리번호) 취득	15일 이내에 외국인은 허가서 사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한 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출두해 비자 접수	주한 멕시코대사관 혹은 전세계 영사관이 있는 재외공관 가능

	단계	설명	담당기관
3	영사과 인터뷰	1. 비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뷰 일자 통보 2. 인터뷰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 가능	주한 멕시코대사관 혹은 전세계 영사관이 있는 재외공관 가능
4	비자 발급	1.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비자수수료 44달러 지불 (이때 받는 영수증에 발급일자 기재) 2. 비자발급일에 주한 멕시코대사관 영사관에 출두(오후2:30~4:00)해 직접 비자 발급 사항과 영수증 내용 확인	주한 멕시코대사관 혹은 전세계 영사관이 있는 재외공관 가능
5	멕시코 입국	1. 비자신청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효한 단수비자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멕시코 입국 (동 단수비자로는 멕시코 입국 1회만 가능) 2. 입국 시 FMM(관광비자) 작성 및 수령. FMM에 '교환용 비자(Visa para Canje)'라고 표시.	멕시코 이민청
6	외국인등록증 취득	1. 외국인등록증 취득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 시 수령한 FMM,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수수료 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이민청에 출두하여 제출 2. 외국인등록증 취득 후에는 국외 여행 가능	멕시코 이민청

자료: 주한 멕시코대사관

멕시코 고용주등록증 취득

[고용주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ón del Empleador

1. 준비서류:
   - 등기된 회사정관/PRIMER TESTIMONIO DE ACTA CONSTITUTIVA
   - 대표자 위임장/PODER NOTARIAL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RFC
   - 회사 주소지증명서/COMPROBANTE DE DOMICILIO
   - 최근 세금신고증명서/ULTIMAS DECLARACIONES DE IMPUESTO
   - 이민청 양식 고용주등록증 신청서 기재: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
   - 고용리스트 작성/LISTA DE EMPLEADO (현지인 직원이름 최소 1인 이상 필요):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
2. 신청장소: 멕시코 이민국
3. 소요기간: 고용주 등록증 발급일까지 신청일로부터 통상 3주 정도 소요
4. 이민청 납부 인지대/수수료: 무료

자료: 멕시코신이민법근거 CHO&ASOCIADOS 법무법인정리

멕시코 워킹비자 신청

[워킹비자] Oferta de empleo
1. 준비서류:
   - 고용주등록증사본/CONSTANCIA DE INSCRIPCION DEL EMPLEADOR
   - 외국인 여권사본/PASAPORTE
   - 워킹비자 신청서/CARTA OFERTA DE EMPLEO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이민청 양식 워킹비자 신청서 기재: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
2. 신청장소: 멕시코 이민국
3. 소요기간: 비자허가서 NUT(처리번호) 취득까지 신청일로부터 통상 3주 정도 소요
4. 이민청 납부 인지대/수수료: 무료

자료: 멕시코신이민법근거 CHO&ASOCIADOS 법무법인정리

영사인터뷰

[영사인터뷰] Entrevista Consular
1) 사전예약 필수
   - CITAS en MEXITEL로 예약 혹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당영사관 직접 인터뷰 예약
   - 인터뷰신청서는 해당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뷰는 영어나 스페인어로 진행
   - 여권사진 1매와 미화$44달러 인터뷰 수수료 지참
2) 기본적인 질문
   - 취업배경이나 멕시코에서 근무하게 될 회사 이름, 주소, 사업목적, 회사내 직급이나 수령하게 될 월급여 등 기본적인 질문
3) 멕시코에 방문 및 체류사실 여부 확인
   - 반드시 관광이나 비즈니스 차 멕시코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절대 초청장을 발급한 멕시코 회사에서 다른 목적의 체류기간 중 일을 했었다고 대답하면 안됨
   - 인터뷰 시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 그리고 장기 체류할 멕시코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여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멕시코입국 시 입국비자 취득 시 주의사항
   - 입국비자양식/FMM 기재란에 보면 7. 입국목적 PURPOSE OF TRIP 란 OTHER 란 에 표기해야 함
   - 이민청 입국 심사관에게 멕시코 영사에게 워킹비자 임시비자를 승인받고 멕시코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설명해야 함
   - 입국목적이 카드형 비자로 교환하기 위한 CANJE DE DOCUMENTO 라고 설명해야 함
   - 이민국 직원이 CANJE 라는 란에 표기하고 30일 체류기간을 적어 준 입국비자/FMM를 받아야 함

자료: 멕시코신이민법근거 CHO&ASOCIADOS 법무법인정리

단기파견 근무자 입국사증(비자)

단기파견 근무자 거주비자 신청 시 구비 서류

채용 · 고용 · 근로 비자	파견 · 주재원 · 상용 · 기술 비자
• 여권 원본과 사본 – 여권에 최소 3페이지 이상 빈 사증란이 남아있어야 함. – 전자여권 또는 구여권일 경우, 멕시코 입국 전 경유국가의 경유비자를 확인 – 여권유효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꼭 기재해야 함 – 여권 서명은 비자신청서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사진: 2.5cm X 3.5cm 흰색 배경, 안경 착용 금지, 최근 30일 이내 촬영, 비자신청서에 부착해 제출 • 비자신청서 • 영어나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앞면과 뒷면 모두 작성 – 가급적 컴퓨터로 작성하되, 컴퓨터 작성이 안 될 경우 육필로도 가능 –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서 뒷면에 여권과 동일한 부모의 서명 반드시 포함	
• 멕시코 이민청(INM) 발행 비자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 고용인의 이름, 여권번호, 고유처리번호(NUT), 비자승인번호 명시 • 멕시코업체의 스페인어로 작성된 초청장 원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지 사용) – RFC,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초청장 발송인의 여권 또는 멕시코거주비자 앞뒷면 사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영리목적임을 명시(계약서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영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인등록증, 사증, 유효한 비자 중 택일	• 멕시코업체의 스페인어로 작성된 초청장 원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지 사용) – RFC,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초청장 발송인의 여권 또는 멕시코거주비자 앞뒷면 사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비영리목적임을 명시(한국 원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반드시 명시, 멕시코 현지에서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출장증명서(영문) – 회사공식문서(레터헤드지 사용)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판, 법인인감 날인 – 비자신청인 여권과 동일한 성명, 여권번호, 방문목적, 방문기간 명시 – 구체적인 직위 및 업무 명시 – 급여 및 비영리목적임을 명시(한국 원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무조건 명시)

채용 · 고용 · 근로 비자	파견 · 주재원 · 상용 · 기술 비자
• 항공권 예약표(편도 티켓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영문) • 본인 명의일 경우, 미화 2000 달러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영문) 및 6개월 거래내역서(국문 가능)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명의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제출 • 비자신청인의 신분증명서(영문)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중에서 해당서류 택일	• 주민등록등본(영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인등록증, 사증, 유효한 비자 중 택일 • 항공권 예약표(편도 티켓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영문) • 본인 명의일 경우, 미화 2000 달러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영문) 및 6개월 거래내역서(국문 가능)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명의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제출 • 비자신청인의 신분증명서(영문)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중에서 해당서류 택일

• 수수료: 미화 44달러 (원화 현금으로 주한 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 납부. 적용환율은 매월 다름)
• 비자처리기간: 10일(주말 제외)
• 멕시코 입국 3주 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고려 요망

자료: 주한 멕시코대사관

가족동반비자

[가족동반비자] Unidad Familiar

1. 자격조건/대상
   – 멕시코 비자를 취득한 가장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기타
2. 체류기간
   – 1년에서 4년 그 이후 영주권 취득 자격
3. 신청장소
   – 멕시코 이민청 혹은 주한멕시코 대사관 영사과
4. 준비서류
   – 가족동반비자 발급신청서, 가장의 카드비자 사본/원본대조,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양자 경제력 증빙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주소지증명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비자 심사 수수료 및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절차
   ❶ 신청 → ❷ 심의 및 승인 → ❸ 사진제출, 지문날인 카드비자 발급신청서 서명 → ❹카드비자 발급
6. 기간: 신청 후 카드비자 발급까지 통상 4주 정도 소요

자료: 멕시코신이민법근거 CHO&ASOCIADOS 법무법인정리

1.2. 현지채용

채용방법은 대상의 자격요건과 인원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채용 업체를 통해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원모집 또는 위탁모집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구인광고의 경우 대도시는 일요일과 월요일 신문에, 지방 중소도시는 토요일과 일요일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현지채용이나 파견근무자를 찾고자 할 경우 국내 청년들의 중남미 취업지원을 위해 2017년 개소된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K-Move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서류심사 면접 선발

구직희망자들의 이력서가 모이면 우선 채용담당자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후보자들을 선발하고 면접을 준비한다. 멕시코에서는 이력서에 간단한 개인신상정보와 학력 그리고 직장경력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소개의 글이나 상세한 가족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면접을 통해서는 이력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은 이전 직장에서 동료, 회사 또는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기 때문에, 구직자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전화번호와 직속상관의 성명 등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방침과 여건에 따라 적성검사 및 리더십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채용대상자가 결정되면 해당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시작일자를 정한 후, 이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모든 계약조건을 문서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너스나 승진 가능성 등에 대한 구두 약속은 절대 삼가야 한다. 모든 근로계약 관련 내용은 노동법에 의거해 서면으로 작성, 서명하도록 해야 향후 있을지도 모를 법정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 일단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원은 약 2주, 관리자는 약 한 달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갖는 것이 상례이다.

근로계약

2012년 12월 1일 멕시코연방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정적 사업 혹은 기간이 분명한 이벤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일시적 · 임시적 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

법 개정 이후 시간제 근로자, 시험채용 및 수습계약 같은 임시채용, 특정기간 채용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주 입장에서 유연한 노동 고용을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시험채용 (Periodo de Prueba) 및 수습채용(Capacitation Inicial)을 활용하여 수습 및 시험 채용 기간 중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업무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검증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시험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며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수습계약을 체결할 경우 90일 기간을 둘 수 있다. 시험채용 및 수습채용 모두 일반 관리직 또는 특수 기술직인 경우에 최대 180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시험채용 및 수습 기간 종료 시 사용자는 생산성, 교육 ,훈련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채용 및 수습채용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될 권리 그리고 법적 복리후생 수당(유급휴가, 휴가비 및 연말보너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기업은 시험채용 및 수습기간 임시채용 계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노동법 제25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명, 국적, 나이, 성별, 기혼 여부, 주민등록번호(CURP), 연방납세자등록번호(RFC), 거주지 주소
- 근로기간의 특정 또는 불특정 여부, 기간제 여부, 신입교육 여부, 수습 여부 등 고용 관계의 형태
- 상세한 근로 내용
- 업무를 수행할 장소 혹은 장소들
- 근로시간
- 급여의 액수와 지급 방식
- 급여 지급 일자 및 장소
- 노동법에 의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교육이나 훈련 내용
- 휴일,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기타 근로 조건

근로계약 해지

해고는 집단해고, 집단감원, 개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당해고 사유 발생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간의 월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20일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무연수가 12년이 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당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정당해고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정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정당한 해고사유(노동법 제47조)

1) 근로자 또는 추천한 노조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태도 또는 권한에 결함이 있음에도 허위 증명서나 신원보증서로 사용자를 기만한 경우, 단 이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근무 개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
2)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에 사용자, 그의 가족 또는 회사나 사업장의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고객사 및 공급업체 등에게 부정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혹은 학대를 가한 경우, 단, 누군가 이를 야기하거나 정당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
3) 근로자가 위 항에 언급된 행동을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여 직장 내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
4)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용자, 그의 가족 또는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위 2항에 언급한 행위를 하여 근로관계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5) 근로자가 고의로 근무 기간 중 혹은 근무를 하기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건물, 작업, 기계, 공구, 원자재 등 사물들에 물질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6) 근로자가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의 유일한 원인으로써 5항에 언급한 것들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경우
7) 근로자가 직무태반 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인해 사업장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8) 회사 작업장 혹은 사업장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부도덕적인 행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
9)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0) 고용주의 허락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의 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1)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2) 근로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고 혹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3) 만취한 상태에서 혹은 마약이나 해로운 약물을 복용한 채 출근한 경우, 단 처방전이 있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의사의 처방 전을 제시해야 함
14)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고형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14 BIS) 법이나 시행령이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를 근무시작 후 2달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15) 상기 항목들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들로써 중차대하고, 또 유사한 결론을 유발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를 위한 적법 절차

-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위법행위 내용과 위법행위가 일어난 날짜를 명시해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건경위서(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해 해당 근로자와 증인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노동중재위원회에 해당 근로자의 등록된 최종 주소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후자의 경우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사용자를 통해서든 노동중재위원회를 통해서든,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 해지사실을 통보 받기 전까지의 해고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며, 만약 사용자가 상기 절차를 해당 기일 안에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에 의거 노동중재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이 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은 노무재판에서 관련 사실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중재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대립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수용한다.

고용주 귀책의 근로계약 해지로 간주되는 경우/부당해고(노동법 제51조)

- 근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측이 고용 조건을 속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용자, 그의 가족,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부정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 언어물리적 폭력 및 성희롱, 위협, 학대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 업무 이외의 일로 상기 항에 언급된 행위가 발생해 고용 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급여를 감봉한 경우
- 근로자가 관례 혹은 합의에 따라 고정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받아야 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비품이나 도구들을 파손한 경우
- 사업장의 미흡한 위생 상태나 법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위배하여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의 안전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 사용자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 근로자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행위 내지 활동을 요구한 경우
- 위 항목들과 유사한 이유들로서 중차대하고 근무에 비슷한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 근로자는 위에 언급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52조).

부당해고 판정 시 보상 기준(노동법 제48조)

-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복직을 신청하거나,
- 최종급여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체불임금(최종급여 기준 최대 12개월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만약 판결이 12개월 내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12개월 이후 기간에 대해 15개월분(3개월 배상금과 12월 분)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산정은 근로자의 사망일까지로 한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부당해고로 판결이 날 경우에 해당 계약이 특정기간인지 혹은 불특정기간인지에 따라 보상금액 산출 기준이 확연히 달라진다. 불특정기간의 계약인 경우는 3개월분의 급여와 법정체불임금에 근무 연수별 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상금액이 되지만, 특정기간의 계약인 경우는 ①1년 이하의 계약은 3개월분의 급여와 법정체불임금에 더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금액이 되고 ②1년 이상의 계약은 3개월 치의 급여와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해 첫해의 6개월 급여 + 근무 연수별 20일 치의 금액이 보상 금액이 된다(제50조). 이는 임시계약을 방지하려는 벌금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직 의무 회피를 위한 보상 기준(노동법 제49, 50조)

-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 업무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뢰 기반 업무 근로자, 가사근로자,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금의 지불을 통해 복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근로관계가 1년 미만의 특정기간인 경우, 총 근무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총급여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의 특정기간인 경우, 근무 첫해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0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 근로관계가 불특정기간인 경우, 각 근속연수당 20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 본 조항에 명시된 보상금은 노동법 제48조에 명시된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근로계약관련 필수 확인사항

근로계약 작성 전에 요구해야 할 필수서류

- 공식신분증(여권 혹은 선거증)
- 국세청 납세자등록번호(RFC)
- 주민등록번호 (CURP)
- 거주 주소지 공과금 고지서(Comprobante de Domicilio)
- 추천서 2매
- 친필로 작성 및 서명된 응시지원서
- 본인출생신고서 사본
- 결혼신고서 사본
- 자녀출생신고서
- 이력서
- 사회봉사증명서
- IMSS 등록증명서 최종 사본
- 연금 영수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 전문직종 국세청 등록증명서 사본
- 현재 혹은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서 원본
- 증명사진 2매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 원본 각 페이지마다 서명 날인 여부
- IMSS 등록증명서 제출 여부
- 회사규칙 준수동의서 각 페이지마다 서명 날인 여부
- 회사신분증 인수증 서명 날인 여부
- 업무상 특허 및 비밀보장 각서 서명 날인 여부
- 사령장 인수증 서명 날인 여부
- 급여 은행계좌 입금신청서
- 사고발생 시 수혜자 지정서
- 저축장려 지원금 수령 동의서

근로계약 기간 중 필수 관리사항

- 급여수령증 서명 날인 여부
- 판매·서비스 커미션 수령증 서명 날인 여부
- 다음과 같은 제반 상여금 및 성과급 수령증 서명 날인 여부
- 연말 보너스
- 휴가지원비
- 연차 휴가비
- 종업원 이익배당금
- 초과근무수당
- 일요일 유급휴가비
- 공휴일 유급휴가비
- 저축장려지원금
- 출근 또는 정시출근 포상금
- 기타 포상금
- 자필 서명된 근태 기록카드
- 사회보장세, 주택융자 적립금, 개인연금 납입영수증
- 정기 건강 진단서
- 가구 융자 확인서
- 지각·결근 신청서
- 결근 확인서
- 사건 경위 조서
- 노조 가입 증명서
- 병가 확인서
- 사회보장기관의 산재 또는 직업병 확인서
- 서명 날인된 수표 수령증
- 사회보장기관의 제반 변동사항 신고서
- 평가표, 보고서, 메모 등
- 융자금 수령증
- 기타 작업장 내 보고서

근로계약 종료 시 필수 확인사항

- 퇴직서·사직서 서명 날인 여부
- 상세 퇴직금 정산표 서명 날인 여부
- 수표 수령증 서명 날인 여부
- 추천서 수령증 서명 날인 여부
- IMSS 퇴직신고서 서명 날인 여부
- 필요 시, 중도해약 통지서 서명 날인 여부
- 필요 시, 사건경위조서 서명 날인 여부
- 근로계약 종결 합의서 서명 날인 여부
- 퇴직 후 비밀보장 준수 각서 서명 날인 여부

1.3. 급여(인건비)

먼저 급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료는 정신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보수를 말하고, 임금은 협의적으로 육체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급여란 급료, 봉급, 임금의 총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멕시코 노동법 제84조에는 "급여는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급료, 사례금, 수당, 주택 제공, 추가 보너스 및 추가 임금, 수수료, 현물 지급 및 기타 다른 형태의 돈 혹은 수당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동기부여의 수단이자, 가처분소득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가 아닐 수 없다. 처음 종업원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급여(Salario)와 복리후생(Prestación) 조건이다. 영업직의 경우에는 판매 증대를 꾀하기 위해 판매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기본급여보다 더 많게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급여를 말할 때는 기본급과 복리후생, 커미션(Comisión) 명목으로 지급되는 제반 보수 등을 모두 포함해 언급하는 것이 옳다.

1.3.1. 기본급여

근로계약 체결 시, 세금공제전 금액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얼마라고 합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결정되고, 일일임금이 산출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상기 일일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본급여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3.2. 법정최저임금

임금체계는 정부 · 사업주 ·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복지부 산하기관 최저임금위원회(CONASAMI)가 결정하는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과 해당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말부터 A 지역과 B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2015년부터 지역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발표한다. 2021년 현재 일일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141.70페소이다. 북쪽 국경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213.39페소이다.

1.3.3. 실제 급여수준

위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 임금수준은 이보다 3~4배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활동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외국인기업 집중투자지역을 중심으로 현장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크게 올랐다. 일례로 북부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몬테레이의 경우, 이미 2010년에 시간당 평균임금이 5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관리자급 급여는 미국 수준에 육박할 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접경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인 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인접 미국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 임금을 살펴보면, 화학, 석유 · 석탄, 일반기계, 운송장비 분야의 임금 수준이 평균보다 높으며, 식품, 의류, 목재업 등의 임금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1.3.4. 급여 관련 세금 및 사회보장청 납부금

멕시코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관련 세금 이외에 사회보장성 납부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급여의 약 40% 수준이다.

| 표 Ⅲ-1 | 세금 및 사회보장성 납부금의 사용자와 근로자 분담률(D.F.기준)

항목	사용자 분담률 (기본급여 대비)	근로자 분담률 (기본급여 대비)
Enfermedades y maternidad (질병 및 출산)	20.40%	-
Excedente de tres salarios mínimos generales (SMG) (실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3배 초과 시 부과되는 납부금)	1.10%	0.40%
Prestaciones en dinero (현금 제공 수당)	0.70%	0.25%
Gastos médicos pensionados (연금 의료비용)	1.05%	0.375%
Invalidez y vida (장애 및 생명보험)	1.75%	0.625%
Riesgos de Trabajo (근로위험보험)	0.5%	-
Guarderías y prestaciones sociales (육아 및 사회보조금)	1%	-
Seguro de retiro (퇴직 보험)	2%	-
Cesantía en edad avanzada y vejez (고령퇴직적립금)	3.150%	1.125%
INFONAVIT (근로자주택기금)	5%	-
Impuesto Estatal sobre Nómina (주정부 급여세)	3%	-
Impuesto sustitutivo (원천소득세)	3%	-
TOTAL	42.65%	2.775%

자료: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1.3.5. 기업수익의 근로자 배당(PTU)

1963년 이후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노동법은 모든 기업이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일부를 최고경영자과 임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117-131조). 분배율은 정부기구인 '근로자의 기업이익 참여를 위한 국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적용 분배율은 10%이다.

기업이익 근로자 배당금의 산출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의 10% 해당 금액이다.
- 법인의 수익이 순전히 용역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와 부동산 임대사업 및 대출과 이자 회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배당금은 1개월분 급여를 초과하지 못한다.
- 세금신고 마감 후 60일 이내 기업이익 근로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배당 방식

- 확정된 수익배당금을 50%씩 두 몫으로 나누어, 50%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무관하게 한 해 동안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배한다.
- 나머지 50%는 한 해 동안 근무한 결과로 수령한 급여 총액 기준으로 분배한다. 단, 중요 직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의 급여보다 많이 받는 자는 상기 기준 급여액의 120%(1.2배)를 최대 배당금액으로 한다.

예외사항

- 신규 사업체의 첫해인 경우
- 신제품을 생산하는 2년차 신규 업체
- 탐사 중인 광업 등 유사 업종의 사업체
- 기타 법에 의해 설립된 복지기관 등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이익의 축소

멕시코 세무회계는 매출원가에 당해 연도 제 상품 구매총액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므로 세무조정 시 상당 부분 축소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많은 기업이 당해 연도에 많은 이익이 날 것이 확실해지면 세무상 매출원가금액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초과구매를 실시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구매계약이 체결된 건으로서 아직 입고가 되지 않은 미착재고일지라도 차년도 3월말 이전에 입고가 가능하다면 동 구매대금도 매출원가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구매계약서에 대한 공증 확인이 필요하고, 차년도 세무신고 확정시 사실 유무에 의거, 확정 신고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1.4. 근로시간과 관련 수당

1.4.1. 법정 표준근로시간

멕시코는 관행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정근무시간은 노동법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일일 휴식시간 30분과 중식시간도 작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종업원에게 중식시간에는 작업장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나중에 노동쟁의 발생 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III-2 | 표준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 구분	최대 근로시간
주간(06:00~20:00)	8시간
야간(20:00~06:00)	7시간
혼합(야간 3시간 30분 미만)	7시간 30분

자료: 노동법

1.4.2. 초과근무수당

멕시코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8시간x6일=48시간이나, 관행적으로 주5일 근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한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 제65조: 근로자 당사자, 동료, 사주, 혹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고나 변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 노동법 제66조: 밀린 업무나 생산증가를 위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3시간, 1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노동법 제67조: 제65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는 일상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제66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는 9시간까지 일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 노동법 제68조: 근로자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의무가 없다. 1주에 9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10시간째부터는 3배의 임금을 받는다.

즉, 초과근무는 1일 3시간 이상, 1주 9시간 이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1주 9시간 이상 근무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분명한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9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멕시코의 경우 초과근무는 반드시 상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즉, 직원이 임의로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 사무실이나 공장에 남아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과근무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노사 양측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무자와 관리자들은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일일이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급을 받는 직원(노동법 제88조에 따르면, Trabajo Material, 즉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기능직 또는 직접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주급을 지급해야 함)의 경우 정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훗날 노사문제를 방지하는 데 바람직하다. 노동소송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 정확히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사사로운 분쟁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 표 Ⅲ-3 | 초과근무수당 계산 기준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9시간 이하	시간당으로 계산하며 일상 임금의 2배
9시간 초과	시간당으로 계산하며 일상 임금의 3배

자료: 멕시코 노동법

〈 초과근무수당 정산 예 〉

- 하루에 8페소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페소가 된다.
- 공장의 화재 진압을 위해 4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4페소를 받게 된다.
- 업무로 인해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이는 9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평상시의 2배인 12페소를 받게 된다.
- 업무를 이유로 일주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21페소를 받게 되는데, 이는 9시간에 대한 평상시 두 배인 18페소와, 9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평상시 3배인 3페소의 합이다.

1.4.3. 일요특근수당

보통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 일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노동법 제71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 유급휴일을 가진다. 휴일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주중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즉, 노동자들은 주중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일했다면 제공한 노동에 대해 별도로 두 배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만약, 일요일에 근

무를 했다면 평상시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특근수당(Prima Dominical)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 10페소의 기본임금으로 계약하면 일주일 임금은 70페소가 된다. 그중에서 60페소는 6일간 노동의 대가이고 10페소는 7일째 휴일을 위한 것이다. 만약, 휴일에 일했다면 그날에 대한 임금으로 30페소를 받는다. 그중 10페소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고, 20페소는 휴일에 일한 두 배의 임금이다. 그러나 만약 일을 한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통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특근수당 2.50페소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즉, 일을 한 일요일에는 32.50페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지급일자의 간격

- 1주일 간격: 육체노동자의 경우 급여 지급일자의 간격을 1주일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 15일 간격: 다른 모든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자의 간격은 1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4. 실적에 따른 성과급

영업 부문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급여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커미션)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급여가 최저임금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과급 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외부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성과급 비율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즉시 합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서로 작성되어 서명, 날인이 이뤄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성과급 비율의 변경은 차후 노동쟁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거래처의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신규 거래처 발굴이 주요 판매활동이라면 신규 거래처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몇 퍼센트, 기존 거래처의 재계약 시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물론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 또는 신규 거래처 수주 또는 계약 체결 시 얼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분명하게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내에 해약을 한다면, 이미 지급한 커미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커미션을 환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기존 고객 유지 보너스 등의 명목을 통해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보너스가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계약서 서명에 앞서 차후에 시비 거리

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각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커미션은 종업원의 정식 급여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IMSS 납부금액 산출, 종업원의 원천세 납부 계산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1.5. 복리후생제도

1.5.1. 휴일

❯ 법정공휴일(노동법 제74조)

- 1월 1일: 신년
- 2월 첫 번째 월요일: 제헌절(2월 5일)
- 3월 세 번째 월요일: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 탄생일(3월 21일)
- 5월 1일: 노동절
- 9월 16일: 독립기념일
- 11월 세 번째 월요일: 혁명기념일(11월 20일)
- 12월 1일: 6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
- 12월 25일: 성탄절
- 기타 선거일: 연방과 지방의 선거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선거

❯ 선택적 공휴일

- 3월 하순: 부활절 주간(매년 변동)
- 5월 10일: 어머니의 날
- 10월 12일: 신대륙 발견일
- 11월 2일: 만성절
-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출현 기념일

기업의 재량권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휴일은 부활절 휴일을 포함해서 약 6~7일 정도이다. 법정공휴일과 선택공휴일을 포함해서 연간 약 12일 정도의 휴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2. 근속연한에 따른 유급휴가

노동법 제76조는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매년 6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유급휴가기간은 근속연한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총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증가한다. 4년 근속 이후로는 5년마다 2일씩 증가한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표 III-4 | 근속연한에 따른 유급휴가일수

근속연한	유급휴가일수*	근속연한	유급휴가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0년 이상 25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8일	25년 이상 30년 미만	2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35년 미만	2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2일	35년 이상 40년 미만	26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4일	40년 이상 45년 미만	28일
10년 이상 15년 미만	16일	45년 이상 50년 미만	30일
15년 이상 20년 미만	18일	...	...

* 근무일(día laboral) 기준.

자료: 멕시코 노동법

노동법 제77조는 1년 미만의 비연속 근무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 역시 근무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일한 노동자는 6일의 절반인 3일의 휴가를 가진다.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유급휴가기간은 최소 6일 연속이어야 한다(제78조). 휴가는 급여로 보상될 수 없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 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제79조).

1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1년을 채우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사업주는 그 다음 해 6개월 내, 말하자면 2016년 1월 2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기간 내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첫해 기준 연례 휴가를 며칠(6일 이상)로 시작할 것인지는 각 기업의 재량권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8~10일로부터 시작해 매년 2일씩 증가하는 제도를 사용한다. 관공서에서는 연간 20일을 기본적으로 주기도 한다.

1.5.3. 휴가수당

노동법 제80조에는 휴가일수만큼 하루급여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휴가수당(Prima vacacional)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휴가수당은 휴가기간 동안 통상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 임금 100페소의 노동자가 6일간 휴가를 받았다면, 휴가기간 동안 받는 임금 600페소에 25%에 해당하는 휴가수당 150페소를 추가해 총 750페소를 받게 된다. 이렇듯 법정 휴가수당은 하루급여의 최소 25%이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하루급여의 50%를 지급하기도 한다.

1.5.4. 적치 휴가보상제도

연례휴가는 차년도 6월까지 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가기간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은 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과다한 업무 상황에 따라 부득이 개인이 연례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기업은 차년도 6월이 경과했음에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또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한다.

1.5.5.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의 사회보장프로그램

동 국가기관은 1942년 설립되어 보건소 및 국립병원 기능과 함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시설이나 환자에 대한 응대가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대부분의 멕시코 국민은 IMSS 운영 병원을 이용한다. 경미한 질환의 진찰부터 중환자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줄이 있든가 복이 많은 사람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IMSS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혜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리후생 혜택이 된다.

기업의 IMSS 납부금은 준세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급여 관련 원천세나 지방세보다도 금액이 더 크다. 일부 가내수공업체나 열악한 소기업의 경우 IMSS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복리후생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IMSS에 등록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간헐적으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IMSS에 등록할 의무는 없다.

1.5.6. 연말보너스

노동법 제87조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최소한 15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연말보너스(Aguinaldo)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연말보너스 지급일 당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기간만큼 연말보너스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연말보너스는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말 보너스와 구분해야 한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보너스는 수령했지만 노동법에 규정된 연말보너스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20~30일분의 급여 상당의 연말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1.5.7. 기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다음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

- 민간의료보험(Seguro de gastos médicos mayores)
- 생명보험(Seguro de vida)
- 차량(Autos)
- 자동차보험(Seguro de autos)
- 식료품상품권(Vales de despensa)
- 주유상품권(Vales de gasolina)
- 식당상품권(Vales de restaurante)
- 의류상품권(Vales de uniforme)
- 저축장려금(Fondo de ahorro)
- 개인대출(Préstamo personal)
- 근속수당(Bono por antigüedad)
- 정기출근수당(Bono por asistencia y puntualidad)
- 교통수당(Bono por transportación)
- 분기별 수당(Bono trimestral)
- 교육보조금(Becas para la escuela)
- 주택임차지원(Ayuda de renta)
- 학용품지원(Ayuda de artículos escolares)
- 안경지원(Ayuda de dotación de anteojos)

- 장례비지원(Ayuda de gastos de funeral)
- 체력단련지원(Ayuda de gastos deportivos)
- 식사비지원(Ayuda de gastos de comedor)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기관 및 법규범에 따라 상기 복리후생제도들을 급여성 보수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계약서 또는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판례를 통해 나타난 세 가지 관점이란 대략 다음과 같다.

IMSS와 INFONAVIT(국가근로자주택연금청)의 해석

특정 복리후생 항목(Prestación)을 기본급여(SBC: Salario Base de Cotización)로 간주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 고정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IMSS와 INFONAVIT 세금 산출의 기준 금액에 포함된다. 사회보장 성격의 혜택이나 업무 수행에 매우 필요한 작업 도구로 간주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노동법상 보상 관점(Indemnización Laboral)

특정 복리후생 항목(Prestación)을 사회보장 성격의 혜택(Prestación de previsión social)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비품 또는 도구로 간주한다면 동 항목은 차후 퇴직 보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원천세 또는 법인세(ISR) 관점

근로소득 원천세 및 법인세는 사회보장 성격의 혜택의 경우 법인에는 47%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공제로 인정을 해 주고, 개인에게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를 면제한다.

매월 주택비 보조는 INFONAVIT에 불포함, 퇴직보상금에는 포함된다. IMSS와 INFONAVIT에서는 일일 최저임금의 20% 이상 지급 시에는 기본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회계 요건을 갖춘다면 법인세 및 원천세 공제도 적용된다.

교통비 보조는 사회보장 성격으로 간주해 퇴직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업무상의 여행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IMSS에 포함하지 않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기본급여에 포함한다. 법인세와 원천세에서는 해당 근로자 급여의 10% 이하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의 경우에 한해서 공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성과급 및 상여금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보상금에 포함되나, 성과에 따른 상여로서 조건이 분명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는 공제 가능 금액이고, 원천세는 세금 부담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민간 의료보험비는 퇴직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IMSS, INFONAVIT 및 원천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에는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이다.

휴대전화비는 업무상 통신 수단으로서 간주해 퇴직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IMSS, INFONAVIT 및 원천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에는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이다.

1.6. 노동조합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으며 연방노동법이 노조활동을 규율한다. 사업장별, 산업별, 전국범위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복수노조도 허용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단일노조가 대부분이며 노조설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인 이상 가입하여야 하는 데 멕시코 전체 근로자의 40%가 노조에 가입했으며, 2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 8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중 20%만이 단일사업장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는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멕시코에서는 혁명 이후 수많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은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고, 멕시코 지역노동자연맹(CROM: Confederación Regional Obrera Mexicana)과 같은 단체는 1927년에 그 노조원이 200만 명을 초과할 정도였다. 이들은 정당들과 연계되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전설적인 노조 지도자 피델 벨라스케스(Fidel Velázquez)가 타계한 이후 멕시코 노동계는 그 힘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의 활동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현 최대의 노동조합은 멕시코노동자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CTM)으로 노동조합원의 1/3인 6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참고: CTM은 신화적 지도자 피델 벨라스께스(Fidel Velazquez, 1997년 6월 97세로 사망)의 지도하에 제도혁명당의 노동부문 산하조직으로 편재되어 멕시코 코포라티즘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이 외에도 섬유 · 신발 ·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0만 명이 가입된 혁명적노동자농민연맹(Confederación Revolucionaria de Obreros y Campesinos; CROC), 섬유 · 신발 · 의류 · 해운업 등에 종사하

는 근로자 35만 명으로 구성된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멕시코지역노동자연맹(Confederacion Regional Obrera Mexicana; CROM) 등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은 9개에 달한다. 노동후생부(STPS)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전역에 1,550개의 개별 노동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1.6.1. 주요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노동단체(Organizaciones Sindicales)

- 멕시코 지역노동자연맹(CROM: Confederación Regional Obrera Mexicana): 1918년 결성, 여러 노동단체의 모체
- 멕시코 노동자연맹(CTM: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1936년 결성. 현재까지 멕시코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노동 단체로 활동
- 국가농민연맹(CNC: Confederación Nacional Campesina): 1938년 결성. 농민의 대표창구 역할
- 국가민중조직연맹(CNOP: Confederación Nacional de Organizaciones Populares): 1943년 공무원, 기업가, 자유직업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결성한 인텔리 단체
- 노동자농민혁명연맹(CROC: Confederación Revolucionaria de Obreros y Campesinos): 1952년 결성된 노동자 · 농민 단체
- 노동회의(CT: Congreso del Trabajo): 1966년 결성
- 혁명노동자연맹(COR: Confederación Obrera Revolucionaria): 1967년 결성되어 현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에 소속되어 활동

노동조합(Sindicatos)

- 멕시코 전기노동자노조(SME: Sindicato Mexicano de Electricistas): 1914년 결성된 전기근로자 노조
- 전국교육노동자노조(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 1943년 결성된 교육근로자 노조
- 멕시코공화국 통신노동자노조(STRM: Sindicato de Telefonistas de la República Mexicana): 1950년 결성된 통신근로자 노조
- 공무원노조연맹(FSTSE: Federación de Sindicatos de Trabajadores al Servicio del Estado): 1938년 결성된 공무원 노조
- 멕시코공화국 금속광산노동자전국노조(SNTMMSRM: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Mineros Metalúrgicos y Similares de la República Mexicana): 1934년 결성된 광산근로자 노조

- 멕시코공화국 석유노동자노조(STPRM: Sindicato de Trabajadores Petroleros de la República Mexicana): 1935년 결성된 석유근로자 노조

상기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임금 인상과 임금 조정을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한다든지, 단체협약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해왔고, 아직도 이익단체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생산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부노조에 이미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6.2. 우호적노조

한 기업이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조만간 어디에서든지 노조 관계자가 연락을 해 오던가 곧 시위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우리 회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 회사에서 노동쟁의 활동을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해 버리면, 실제로 통보가 온 날짜에 회사 정문 밖에서 시위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회사 내에 노조가 없다면 이는 분명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걸고 실제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이들 노조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행해지고 있다고 노동당국에 노동쟁의신청서를 제출해 합법적인 쟁의로 허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회사에 실제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통제하기 어려운 노조원들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외부의 우호적 노조(Sindicato blanco, 백색노조)와 계약을 맺고 다른 노조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와 외부노조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단체협약(Contrato colectivo)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호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연회비가 200명 종업원을 기준으로 2만~3만 페소 정도이다. 지점이 있으면 지점도 반드시 협약을 맺고 노조에 등록을 해야 다른 노조에의 한 갑작스러운 사무실 점거 또는 파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지점의 경우는 대개 종업원 수가 적으므로 연회비가 약 1만페소 수준이다. 연회비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무실 주소가 변경될 경우, 외부 노조에도 즉시 주소지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노조에서 자신들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업으로 삼기 위해 새로운 주소지 사무실에 대한 파업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갱신 주기

노동법 제399조에는 단체협약 갱신주기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매년 노조와의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 재등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7. 멕시코 하도급 (아웃소싱)

제조업분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대부분의 멕시코 제조업들은 현장직 및 사무실 직접 채용 부담을 줄이고 PTU 미지급 및 근로관계 형성을 배제하기 위해 아웃소싱 파견근로계약을 활용해 왔다.

2012년 12월 1일 발효된 개정된 노동법은 아웃소싱 인력공급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파견근로자 이용 조건을 엄격화했다. 하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업체는 파견근무자의 실질적인 고용주로 간주하여 파견근무자의 사회보험 IMSS 가입의무 및 근로자 익배당금(PTU) 10% 배당 등 고용주로써의 모든 의무를 지게 했다.

1) 파견 근로자가 회사의 전체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2) 정당한 파견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개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3) 직접 고용 직원의 업무와 파견 근로 직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된다.
4)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받는 업체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인력공급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들의 사회보험가입과 각종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 및 재정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당시 개정된 노동법으로 아웃소싱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그 적용 규정이 해석상 불완전하여 근절시키지는 못하였고 상당수의 아웃소싱이 유지됐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노동법에 의거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아웃소싱 파견근로계약을 전면 금지됐다.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아웃소싱 금지는 아웃소싱이 조세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말의 대량 해고, 연말 상여금 미지급, PTU 미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직원들을 사회보장청에 실제 임금이 아닌 최저 임금으로 신고하여 연금, 주택기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한, 아웃소싱을 악용한 탈세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하도급(아웃소싱) 관련 노동법 개정〉

해당 개정은 노동부(STPS), 재무부(SHCP), 사회보험청(IMSS), 금융정보국(UIF)의 검토를 거쳐 2020년 11월 12일 연방 하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연방 상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4월 23일부 법적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멕시코 관보(DOF)를 통해 게재되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기업의 근로자 이익 배당제(PTU)에 대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이니셔티브 대표 부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이는 내부 서비스 구조 및 인소싱에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노사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하도급 개정안에 관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파견근무)은 금지된다.
2. 기업의 목적이나 주된 경제 활동에 속하지 않는 전문 서비스 및 업무의 하도급 계약은 허용된다.
3. 전문서비스로 분류되는 하도급 기업들은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및 사회 보장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4. 전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 수 있다.
5.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노동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연방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6.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무 · 노무 불이익과 함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7.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8. 연방 노동법 개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하도급 계약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하도급 인력을 정규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참고로 멕시코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아웃소싱을 금지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제노동기구가 하도급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

a) 하도급 및 / 또는 인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b) 전문서비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전문서비스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법안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개정안 공포 후 30일 이내로, 노동부는 전문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게시한다
B) 기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유예기간 90일의 기간을 갖는다.
C)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세무상 효과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기 노동법 개정사항의 기업별 적용 및 이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대 30만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기관 분석에서는 모든 회사가 고용자들을 직접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멕시코 연방정부관보(DOF), 딜로이트 멕시코법인 자료 종합

최근 하도급 규제에 관한 연방 노동법을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법령을 피해 기술적으로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사무직 혹은 현장직 하도급 (아웃소싱)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경비, 식당, 청소 등의 용역이나 공장 건설 등의 특성이 있는 용역만 제한적인 아웃소싱형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즉 아웃소싱 직원은 조속히 직접채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1.8. 효율적인 인력관리

1.8.1.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

노무 관리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낙천적이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생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철학이 분명하다. 춤과 음악을 즐기며,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파티(Fiesta)를 자주 갖는다. 일이나 직장에서의 관계보다는 가족 관계를 우선시한다. 아이들 학교에서 면담이 있거나, 학예회가 있으면 조퇴를 하고라도 참석한다. 개인생활과 가족관계를 희생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한국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2) 개인주의적이다.

대화를 들어보면 형제간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형제간에도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호칭하며 소유격 표현을 절대로 생략하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나의 업무, 나의 사물, 나의 상관(Jefe)을 명확히 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책임은 곧 무책임으로 생각된다.

3) 정이 많고 인격적인 관계를 즐긴다.

날마다 서로 인사를 반갑게 주고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쾌해한다. 하루의 반은 서로 인사하느라 보내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인사하다 보면 안부를 묻고, 안부를 묻다 보면 수다를 떨고, 결국 근거 없는 소문도 많이 퍼지게 되고, 개인의 급여수준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긴다. 이 때문에 회사의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4) 군대식 명령의 문화, 억압된 분위기, 긴장을 잘 견디지 못한다.

멕시코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대식 명령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다. 숙연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2~3일 계속되면 결국 병이 나고 만다. 무엇이든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하는 체질이다. 시무식이나 단합대회도 멕시코 방식으로 리듬을 타고 노래하면서 즐겁게 해야 현지인과 소통이 된다.

5) 자기 상관에게만 복종한다.

상대방의 나이 혹은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상관이 아닌 사람에게는 여간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자기 상관보다 지위가 높은 다른 부서의 사람이 자기 상관의 지시에 상반되는 지시를 하면 절대로 듣지 않는다. 지휘체계와 책임 문제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생활을 중시한다.

상관이 애정을 갖고서 1:1로 조용히 잘못을 지적하면 예의를 갖춰 듣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일이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나중에 인격 모독이나 부당해고로 고소당하는 사유가 되므로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1.8.2. 노무관리 요령

- 현지어인 스페인어를 정복하라.
- 친절하라. 해고를 하고 작별인사를 하는 날까지도 친절하라.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구가 돼라. 이는 노무관리비를 절약하는 최선의 비결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한다.
-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라.
- 정해진 업무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기적인 평가 ·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하라.

- 상관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라.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미래에 줄 것을 절대로 미리 약속하지 말라.
- 대화나 회의를 통해 회사와 상관으로서 원하는 바를 수시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한 태도로 인격적으로 대해라. 가족들 안부를 묻어 친밀감을 표시해라.
- 믿고 맡기면 낭패를 본다. 조언자가 되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며 잦은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해라 .
- 업무와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라. 직책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여부를 확실히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라.
-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한국식으로 인간적인 정을 과하게 기대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
- 법적복리후생 외에 과도한 선택적 복리후생을 약속하지 마라.
- 칭찬은 공개적으로 여러사람 앞에서 해라.
- 과실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인정하는 시말서 및 경위서를 서면으로 쓰도록 해라.
- 한국 근로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간의 근로문화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해라.
- 해고하고자 할 경우 권고사직 및 근로관계 종결합의서를 활용한다.
- 책망이나 질책은 공개적 장소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해라 .
- 이성 간 오해받을 만한 신체접촉을 하지 말고 동성 간 역시 격려성 신체접촉도 하지 마라.
- 큰소리/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서류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 직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직원의 가족을 모독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은 절대 하지 마라.
-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을 경우 사업장 내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증거를 남겨라.
- 노무소송 발생 시 노무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라.

1.9. 노무소송 처리 방법 및 사례

1.9.1. 노무전문변호사를 통한 노무관리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 노무전문변호사를 고용,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 윤리적으로 믿을만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쓰자면 전문법률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높은 수임료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벽이다. 그렇다고 개인 변호사를 쓰자니 신뢰할만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아닌 한 소송의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다. 참으로 어려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근로자가 회사나 회사 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실과 무관한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 근거 없는 상여, 승진, 복리후생 혜택의 약속이 있었다고 소를 제기한다. 회사에

서는 이 모든 거짓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와 판사가 논리적 검증과 증거를 통해 각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별로 실력도 없고,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와 변호사들의 한탕주의가 많은 근로자를 오히려 그릇된 소송으로 이끌고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는 법 지식에 의거해서 소송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전문지식과 윤리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당 소송에 대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승소 가능성, 패소 시 피해 예상 금액, 결론적으로 우리측의 대응 방안은 이러하다." 하고 의견을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상대방의 강점과 우리 측의 약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며, 본인의 소송 운영의 폭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법과 소송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 소송뿐 아니라 변호사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보면 노무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대개의 변호사는 법정 체불 임금이 더 커지기 전에 소송 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타협을 보자는 조언을 많이 한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손실을 줄이고,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낭비를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서 합당한 소송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해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차후의 소송 건을 위해서도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2. 변호사 자문계약의 활용

일반적인 사항이겠지만, 법률적인 중요 사안이 발생한 후에 변호사를 계약해서 소송을 맡기고자 하면, 좋은 변호사를 즉시 구하기도 어렵고 수임료가 사건별로 책정되므로 예상외로 많은 비용이 든다. 오히려 직원이 많은 회사는 노무전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매월 자문료(Iguala)를 저렴하게 지급하면서 평소에 충분한 자문도 받고, 유사시에 별도의 수임료 부담을 낮추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용하다.

노무전문변호사의 경우, 소형법률회사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자문료를 대략 1만 페소 수준(종업원 200명 규모 기준)으로 받기도 한다.

1.9.3. 노동변호사 활용 시 유의사항

자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만 맡겨두면 결코 자문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법률회사도 사업이므로 다른 많은 고객을 상대한다. 단지 여러 고객들 중의 하나가 아닌 합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는 고객이 되려면 평소에 정기적인 회의나 세미나를 통해 중요

핵심 사항들을 확인하고, 서류들에 대해 관리 현황을 진단하는 등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 소송 절차별로 진행 상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면밀히 관리해나가야 한다. 조사 및 변론 기간 중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놓쳐 결국 판결(Laudo)이 패소로 나온 후에는 항소를 통해 아무리 상황을 전환해 보려 해도 대부분의 경우 이미 때는 늦다.

1.9.4. 노무소송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근로자 고용을 위해 이전 직장에 근무태도 등을 문의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향후 이직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이 노동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평소에 업무 교육이나 관리 등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갑자기 해고한다든지, 업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심한 고함이나 인격적 모욕을 느낄 정도의 다그침으로 감정을 상했다든지,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했다든지, 해고 시 적법한 절차와 보상 없이 처리했든지 등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종업원 당사자를 심한 분노와 배신감, 상실감의 감정에 빠뜨리고, 결국 노무소송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에서 언급한 노무관리 요령대로 종업원을 대하고 관리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이다.

수습계약 연속 갱신 관련 사례

사건 경위

A업체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현지인 근로자 Z는 정규직원 채용에 앞서 업무처리능력 및 태도 검증을 위한 3개월 수습직원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후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수습계약을 체결했다. 총 6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A업체는 Z의 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해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수습직원임을 이유로 퇴직금 없이 해고했다.

이 기간동안 사회보험에 가입도 시키지 않았다.

이후 Z가 몇 차례 회사로 찾아와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달 후, 해당 업체는 노동후생부(STPS)로부터 Z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중재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문을 수령했다. 정식 노무소송이 아니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와의 상담결과에 따라 해당 중재에 출두하지 않았으나, 노동중재위원회로부터 Z의 복직 및 사회보험(IMSS) 가입을 요구하는 정식 소장을 송달받게 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노무변호사에게 본 소송을 위임했고, Z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 업체의 입장에 따라 합의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분석

동 사례의 핵심은 일반 관리직이나 특수 기술직이 아닌데도 최초 3개월 계약 후 다시 임시직으로 갱신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사례이며 또한 임시계약 기간 중 사회보장청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이다. 이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사회보장원에 회사를 고발한 사례이다.

-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것은 불법이다. 노동법 39조 A항과 39조 B항에 의거 시험채용 혹은 수습채용 중인 임시직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될 권리 그리고 법적 복리후생 수당 (유급휴가, 휴가비 및 연말보너스)을 지급받을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가 있다.
- 또한 수습채용계약을 또다시 동일한 임시직으로 재갱신한 것 역시 불법이다. 노동법 39조 D항에 의거 시험채용 혹은 수습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사회보장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사업장 혹은 회사 내에서,시험채용과 수습채용을 1번 이상이나, 직급을 달리하거나 승진을 시키는 형태로나, 또는 이미 고용주와 근로관계가 종결된 후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 해도 동일한 근로자에게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즉 같은 임시직 성격으로 갱신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숙지사항

노동법 35조에 따른 근로 · 고용 계약의 종류

특정 공사나 기간이나 정해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근로관계를 제외하면 시험채용이나 수습채용 같은 비정규직(임시직)과 정규직(불특정기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근로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1) 시험채용(임시계약) Periodo de Prueba 는 원칙적으로 30일, 최대 180일 (일반 관리직 또는 특수 기술직인 경우) 계약
2) 수습채용 (임시계약) Capacitacion Inicial는 원칙적으로 90일, 최대 180일 (일반 관리직 또는 특수 기술직인 경우) 계약
3) 불특정기간 (정규계약) Tiempo Indeterminado
   - 시험채용이나 수습채용이 아닌 경우 모든 계약은 불특정 기간으로 간주함.
   - 무기한 근로계약일 경우에도 비연속적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중, 월중, 주중 특정기간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39조 F항 신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주장 시 복직 혹은 해고 수당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함. 부당해고 주장 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3개월분 임금의 해고수당
- 매년 20일분의 보상금
- 휴가비 및 휴가 수당
- 연말보너스
- 부당해고 기간의 IMSS 등록 요구
- 매년 12일분 근속기간의 임금
- 기타 복지후생 보상금
- 시간외 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기타

부당해고 관련 사례

사건 경위

A업체는 프로모터로 현지인 근로자 Z양을 영업부에 채용한 후 실적에 따른 판매 커미션을 지급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겨 그간의 출근현황이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물색했다. 인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Z양을 해고하기로 하고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시하며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고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 · 상여금으로 요구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퇴직금 정산표에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사인을 했지만,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회사를 떠났고, 인사담당자는 굳이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니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해고당한 Z양은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3개월분 해고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요구하는 노무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노무변호사에게 본 소송을 맡겼고 퇴직금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정당해고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부당해고로 패소했다. 판결 후 집행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와 합의해 판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분석

동 사례는 해고 시 사직서를 받아두지 않은 채 정당해고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로, 퇴직금 정산을 하면 설마 소송을 제기할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다가 부당해고로 노무소송을 당한 경우이다.

- 노동법에 의거 모든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음. 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역시 차후에 부당해고로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인은 대부분 평소에 업무교육이나 관리 등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갑자기 해고한다든지, 업무성과 미흡이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인격적 모욕을 주었든지,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했든지, 해고 시 적법한 절차와 보상 없이 처리됐을 경우임.
-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단 고용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무소송을 제기해 복직 또는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음. 재판 결과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고당한 날부터 판결문이 나온 날까지 법정연체임금(최대 1년)을 체불임금처럼 지급해야 함. 부당해고가 아닐 경우, 근속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정산하면 됨.
- 재판과정 중 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음.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합의를 봐서 손실금액을 최소화해야 함. 왜냐하면 노무소송이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차후에 법정연체임금까지 보상하려면 예상보다 큰 액수의 피해를 입기 때문임.

숙지사항

다음과 같은 부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으며 문서나 기타 다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자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간주된다(노동법 제784조).

- 근로자의 입사일
- 근로자의 근속연수
- 근로자의 결근일수
- 고용관계 해지 사유
- 특정사업 및 특정기간 근로계약 종결
- 정당해고 사유 및 날짜가 기재된 통지서
- 근로계약서
- 일일 근무시간
- 휴일 근무수당 지급
- 휴가비 지급 및 휴가일
- 일요일 근무수당, 휴가수당, 근속수당 지급
- 급여금액 및 지급
- 종업원이익배당금
- 주택기금 마련청 등록 및 지급

새로 결성된 노조로부터 파업행위를 당한 사례

사건 경위

A업체는 생산직 근로자 30명이 넘는 가방끈 및 원사 생산업체로, 한 작업장에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결성 및 파업을 막고자 우호적 노조(Sindicato Blanco)인 Z노조와 노조지원비(Cuota Sindical)를 주며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새로운 노조가 근로자들을 설득해 50% 이상의 근로자들을 자신의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새로운 노조가입서를 제시하며 기존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조합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기존 노조가 대응했지만 결국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노조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분석

상기 사례는 기존에 체결됐던 우호적 노조가 노조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새로운 노조 결성으로 인해 노동조합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회사는 새로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이다.

단체협약은 개인근로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근로자의 노동권리 및 복리후생 보호 차원에서 노조단체의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호적 노조를 두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힘든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외부의 우호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주 편에서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우호적 노조를 옆에 둘 경우 최소한 사무실 점거 및 파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숙지사항

파업(Huelga)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되는가?

- 노동쟁의 신청서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 노동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대우가 행해지고 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파업신청서를 제출함.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는 합법적 쟁의로 허가를 받아 파업을 벌일 수 있음. 대부분 파업신청의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 또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 등을 요구하는 것임.
- 노조가 파업신청서(Pliego Petitorio)를 제출하면 노동중재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파업신청서를 통지하고, 고용주가 합법적 파업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허가를 받아 실제로 회사 정문 앞에 요구내용이 수락될 때까지 파업을 실행하게 됨.

단체협약의 갱신주기는 언제인가?

- 노동법 제399조는 "단체협약의 갱신주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협약 내용 중 종업원의 급여수준 항목이 있어 해당연도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1년에 한 번 노조와의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 재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직원 수와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노조지원비를 노조에 지급함.

근로계약 종결합의서 관련 사례

사건 경위

A업체는 그동안 멕시코에서 지점형태로 영업을 해오다가 새롭게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수년간 지점에서 근무한 현지인 근로자 8명과 고용계약 종결합의서를 작성하고 적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부분은 신규 설립된 현지법인과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규설립법인에 채용되지 못한 근로자 Z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3개월분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적절히 대응했고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종결로 퇴직금 역시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분석

쌍방의 합의에 의거 근로관계를 종결했으나 새로 설립한 회사로 채용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적절한 법정퇴직금을 수령하고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다행히 관련서류 작성 및 기타 증인들을 확보해 적절히 대응한 끝에 승소를 한 경우이다.

노동중재위원회에 근로관계 종결합의서나 퇴직금 정산영수증을 승인 받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에 시간과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 계약관계 종결 사유로는 쌍방의 합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계약해지권 행사(정당해고, 부당해고), 근로자의 사망, 특정 사업 또는 작업의 종료, 계약기간 만료, 지분투자의 종결, 근무가 불가능할 만한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기능적 장애, 회사의 폐업 등이 있다.

숙지사항

근로자가 노동법상의 기본권리를 포기한다는 근로자의 사직서 및 합의서는 무효이다(노동법33조).

-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해고수당 혹은 기타 상여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직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무효임.
- 모든 합의서(Convenio)나 부당해고에 의한 퇴직금 정산(Liquidación)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원인을 명확히 서술하고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함.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 없을 때만 승인을 함.

근로관계 종결합의서나 퇴직금정산 영수증은 노동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노동법 제9872조).

- 소송 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결할 때 근로관계 종결합의서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은 노동중재위원회의 승인(Aprobación y ratificación ante la JLCA)을 받아 둠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음.
-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수표나 현금으로 퇴직금 혹은 보상금을 전달하고 노동자에게 근로관계 종결합의서와 퇴직금 · 보상금 수령증에 서명, 날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도록 함.

1.9.5. 신뢰 · 책임있는 관리와 철저한 행정적 준비가 노무관리의 생명

과거 멕시코의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갈취했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멕시코 노동법은 철저히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과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믿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고용 관계를 정리할 때도 신뢰와 예의로서 대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멕시코의 노동법은 그리 큰 제약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측이 고용주 측을 믿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노무관계를 법에 의거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멕시코의 노동법은 회사 측에 너무도 부당하고 불리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루를 근무했을지라도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은 회사 측에서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노동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복직 또는 3개월분의 급료를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 부당해고로 판결될 경우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판결일까지 최대 1년의 체불임금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는 기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정산해주면 된다.

그러므로 멕시코에서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인지부터 시작해서, 계약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근무 중 해고에 합당한 사유들이 발생하는지, 해고 시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원만히 합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2. 세무회계관리

멕시코의 과세권은 주로 연방정부에서 갖고 있다. 멕시코 헌법은 국내외무역, 천연자원의 개발 및 채굴,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업 및 산업 활동, 특정 공익사업과 담배, 석유 및 그 제품 등에 대한 독점적인 과세권을 모두 연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과세권이 연방정부의 경우와 달리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독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지방 및 도시의 부동산과 몇 가지 제품(주로 농업제품 및 축산물)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해 준다. 특별히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는 조세문제에 대하여는 재무부로부터 예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예규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중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추계세액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채무보증, 연결세무신고 등과 같은 사안에 관련된 예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연방세법의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된다.

2.1. 법인관련 주요 세금

2.1.1. 법인소득세(ISR)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다. 2021년 기준 법인 기본 소득세율은 30%이다.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법인소득세 중 30%가 공제된다. 법인 및 개인의 투자대상 및 주거지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Estimulo Fiscal)이 추가로 제공된다. 최근 멕시코정부는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북쪽과 남쪽 국경지역 일부에 1/3 이 절감된 20%의 소득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제해택 수혜자등록부 (Padron de Beneficiarios de Estimulo)에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하다. 총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과세 기간 중에 얻은 소득 중 금전, 유가물(주식, 부동산 등),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은행이자소득이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 산출 방법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세 계산에서는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결산서 상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무조정, 즉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세무조정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회계에서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 의거,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세금신고(Declaración A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다음,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해 소득세가 과잉 부과되는 경우, 환급을 받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상계할 수 있다.

| 법인의 매월 소득세 납부시 산출 예시 |

소득세(ISR)는 총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 및 손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과세 표준)에 법인세율 30%를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이는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적용해 예납한다.

구분	내용	금액
	총매출액	500,000
x	소득계수	이전 연도 이윤율(예, 0.1333)
x	법인세율	30%
=	산출세액	19,995
–	잠정예납금	5,000
=	납부세액	14,995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순수익(Utilidad Fiscal)을 총매출액(Ingreso Nominal)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의 총매출액이 60만 달러였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 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순이익은 8만 달러다. 따라서 소득계수는 이 8만 달러를 총매출액 60만 달러로 나눈 0.1333이 되는 것이다.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주의할 점은 소득계수는 당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2020년 소득계수는 2021년에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17일까지 전월 소득세 납부금액을 산출해 부가세액 등 기타 세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재무부 내규(Resolución Miscellanea Fiscal)에 따라 연방세(Impuesto Federal. 소득세, 부가세)의 경우, 의무감사대상이 되는 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연방납세자등록(RFC) 번호의 가운데 여섯 자리 숫자 중 마지막 숫자에 따라 납부일의 연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자신의 RFC 번호가 GOKP 590810 GK4라면, 벌금 없이 납부일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연방 조세법 제12조에 의거, 세금납부일(소득세의 경우, 17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직후 근무일에 납부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경제부의 결정에 따라 월소득세 납부일은 RFC 번호의 여섯 자리 숫자 중 마지막 숫자가 1이나 2이면 1일, 3이나 4이면 2일, 5나 6이면 3일, 7이나 8이면 4일, 9나 0이면 5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렇게 지연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 즉, 납부일 연장을 통해 22일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다음 달부터는 정확히 매달 22일에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날에 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계수 적용의 예외(소득세법 14조, 15조)

- 직전 연도의 소득계수를 당해 연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2020년에 히트상품을 팔아서 큰 이윤을 남겼지만, 2021년에는 매출이 급감해 이윤 역시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소득계수를 2021년에 적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해 7월부터 당해연도 소득계수로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실제로는 2021년 1~6월에는 2020년 계수를 적용해서 매월 소득세(잠정예납세)를 내고 7월~12월은 2021년 1~6월 소득계수를 산출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직전 연도에 적자를 본 경우: 회계가 적자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소득계수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해 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해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설립 첫 해에는 소득계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잠정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 회기 후 결산해 소득세를 신고한다. 설립 첫 해에 적

자를 거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에 소득계수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잠정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 납부한다.

세금 공제

- 소득세법 제25조와 27조에 다음과 같이 주요 세금공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 환불 및 할인 금액
- 매출원가
- 회사운영비용
- 투자금액(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매년 일정 부분 공제)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실액 또는 회수불능채권
- 퇴직연금적립액, 사회보장기금 회사부담금
- 부채이자지불액
-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 선수금 지불액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이익배당금, 사회보장기금
- 차량구입비(최대 17만 5천 페소)
- 부가세 납부액(특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비공제 대상)
- 회수불능채권
- 로열티 및 기술지원비용
- 기부금(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7% 한도) 등

소득세법 제28조에 의거, 주요 공제불가대상

- 벌금(자연재해 등에 의한 경우, 공제 가능) 배상금, 보상금
- 선물 혹은 각종 판공비
- 손해배상금액
-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광고캠페인 등)
- 시장가격보다 낮게 매각한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분
- 소득세(ISR), 부가세(IVA), 특별소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소득세법 제27에 의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천 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이용하고 회사명의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Factura Electronica)를 함께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회사 운영비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공제대상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출장 시 식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인당 750페소 이하, 국외에서는 1,500페소 이하만 인정된다. 숙박의 경우에는 국내 무제한, 국외 3,850페소까지, 육상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국내외 공히 850페소까지 인정된다. 단,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세금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출 시 담당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생산소비특별세(IEPS)

특수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 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시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주로 주류, 담배, 에너지음료, 복권 등 도박관련 제품과 석유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이미 동 품목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4%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솔린, 담배 그리고 탄산음료 특별소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년대비 3.33% 인상되었다. 가솔린과 디젤유 등 석유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는 석유공사(Pemex)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신설됐다. 일반휘발유인 가솔린 Magna에 리터당 5.1148 센타보, 가솔린 Premium에 리터당 4.3192 센타보, 디젤에 리터당 5.6212 센타보의 종량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는 올해 2021년부터 전년대비 3.32% 인상된 담배 한개피당 0.5108 센타보의 종량과세를 적용하고 탄산음료의 경우 올해 2021년부터 전년대비 3.33% 인상된 리터당 1.3036 페소의 종량과세를 부과한다.

2.1.3. 부가가치세(IVA)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자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기타 세금과 상계하거나 환급한다.

1. 세율: 16%, 8% (남쪽과 북쪽 국경지역), 0%
2. 멕시코 전 지역에 16%의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남쪽과 북쪽 국경지역 중 일부는 세제해택의 일환으로 부가세 8%가 적용된다.
3. 식품, 약품, 농축수산업 장비, 비료는 “0” 세율을 적용한다.
4. 의사면허증 소유 의사진료, 토지, 주택, 서적, 신문 및 정기간행물, 담보대출 이자, 대중교통요금,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멕시코정부는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북쪽과 남쪽 국경지역 일부에 ½ 이 절감된 8%의 부가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제혜택 수혜자등록부 (Padron de Beneficiarios de Estimulo)에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4. 지방세 및 기타세금

멕시코 지방세는 주마다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연방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주는 자체적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낮은 수준의 보유세, 서비스세, 고속도로이용요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각 주는 5%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2002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각 주는 판매세 3%를 징수할 수 있으며 3~5% 내외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주는 거의 없다. 현재 재무부는 연방세금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있어 앞으로 향후 지방세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현재 많은 주에서 급여세(ISN: Impuesto sobre las Nóminas)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의 세율은 2~3% 내외로 정확한 세율은 주별로 다르다. 대표적인 주의 급여세는 다음과 같다.

- 3%: Ciudad de Mexico, Estado de México, Nuevo Leon, Puebla, Veracruz, Michoacán 등
- 2.5%: Aguascalientes, Baja California Sur, San Luis Potosi 등
- 2.4~3.0%: Sinaloa 등
- 2.30: Guanajuato 등
- 2.0%: Queretaro, Gurerro, Jalisco, Coahuila, Chiapaz, Durango 등

이외에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청(IMSS)과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등에 납부할 사용자분담금(Cuota Patronal) 보험료, 부동산 재산세(PREDIAL) 그리고 부동산 취득 시 자산가격의 2~3%를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취득세(ISAI:Impuesto sobre Adquisicion de Inmuebles) 등이 있다.

2.2. 회계관리

멕시코에 투자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는 차이가 없다. 멕시코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창립 멤버로 국제회계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정한 국제회계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국도 동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합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멕시코의 회계 제도에 대해서는 용어 및 관행 그리고 세법상의 차이 이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계원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멕시코회계기준연구개발위원회(CINIF: Consejo Mexicano para la Investigación y Desarrollo de Normas de Información Financiera, A.C.)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멕시코공인회계사회(IMCP: Instituto Mexicano de Contadores Públicos) 산하의 회계원리위원회(CPC: Comisión de Principios de Contabilidad)를 대체하며 2003년에 설립됐다. 물론 형식적 법적 최종권한은 정부기관인 은행증권위원회(CNBV: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정은 독립민간기관인 멕시코회계기준연구개발위원회(CINIF)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기업 · 정부회계기준의 제 · 개정과 해석 그리고 멕시코 회계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도록 하는 일, 제반교육, 출판 업무 등이다.

2.2.1. 회계처리방법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자산은 현금화 실현가능 시간에 따라 유동자산(Activo Circulante)과 비유동자산(Activo No Circulante)으로 구분하는데, 멕시코도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기준에 따라 현금화 또는 판매 · 소비되는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자산으로, 초과 시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급동자산(Activo Disponible), 실현가능자산(Activo Realizable), 기타유동자산(Otro Activo Circulante)으로 나누어지며, 비유동자산으로는 부동산 및 기계 등이 포함된 고정자산(Activo Fijo), 무형자산(Activo Intangible), 기타비유동자산(Otro Activo No Circulante)로 구분하고 있다.

❯ 외화 환산

외화 환산은 거래 발생 시 거래은행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세무에 관련된 경우는 국세청(SAT) 관보공시환율(Tipo de Cambio Publicado por el Banco de México en el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을 적용한다. 동 환율은 거래발생 하루 전 최종공시환율로 계산하며, 국

세청 웹사이트(www.sat.gob.mx)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평가는 멕시코공인회계사회(IMCP)의 재고평가기준(Inventario C-4)에서 취득·생산 가격에 직간접적 구매비용과 관련세금 등을 포함해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고평가방법으로는 개별법(Metodo de Costos Identificados), 평균법(Metodo de Costos Promedios), 선입선출법(Metodo de Primeras Entradas y Primeras Salidas), 후입선출법(Metodo de Ultimas Entradas y Primeras Salidas), 소매재고법(Metodo de Detallistas)의 5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인 수량 파악은 계속기록법과 기말실지 재고조사법을 병행하며, 결산기에 외부감사 회계사(Auditor Externo)의 입회 하에 실지재고량을 조사한다.

대손 회계처리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업체들은 멕시코업체와 거래 시 회수불능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멕시코 도소매상이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회계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증빙서류 관리부실 등으로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대손 회계처리는 분기 말에 각 회사가 채권회수 가능성을 분석하고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절차이다. 대손 추정방법은 기업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내의 상환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으로 가정한다. 대손 확정 후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하고 초과 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해 자산계정을 조정한다.

회수불능채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상환기일 1년을 초과하고 채권자가 국체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채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채권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야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방법

멕시코의 회계체계상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작업시간비례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등 기업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을 어느 것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회계처리방법을 기업의 재량에 맡겨두고, 단지 각 자산 성격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률의 최대 인정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감가상각비용은 대차대조표 상 고정자산(Activo Fijo)에서 각 자산가치가 차감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요 고정자산별 최대감가상각비율(소득세법 제34~45조)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비품 및 집기류: 10%
- 자동차 및 버스, 화물차량, 컨테이너 차량, 지게차 등 운송 장비: 25%
-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스케너, 바코드, 물류 관리 장비 등: 30%
- 선박(Las embarcaciones): 6%
- 항공기: 농약살포 항공기 25%, 기타 10%
- 재생에너지 발전기 및 장비: 100%
- 발전·송전·배전 설비·제분·제당·식용유 설비 등: 5%
- 제철·담배·석탄 설비 등: 6%
- 제지·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장비 및 처리 설비: 7%
- 자동차 및 부품 생산설비, 철로건설장비, 제철기계 생산설비, 과학연구장비, 식품 및 음료 생산 설비 등: 8%
- 화학·석유화학·바이오제약 설비, 출판인쇄 설비 등: 9%
- 전기운송장비: 10%
- 섬유 및 의류 생산설비: 11%
- 식당: 20%
- 건축·건설장비, 농어업용 장비: 25%
- 컴퓨터산업 관련 하드디스크 및 전자카드용 마그네틱 컴포넌트 생산·조립 설비: 50%

연말결산 국세청 신고 및 회계 감사

멕시코 연방세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제32조에 따라 결산기(12월경)에 회사들은 대차대조표(El Estado de Situación Financiera), 손익계산서(Los Estados de Resultados), 그리고 재무상태변동표(Los Estados de Variaciones en el Capital Contable y de Cambios en la Situación Financiera)를 작성해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회계사(Auditor Externo)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회계감사 대상 기업은 연방세법 제32-A조의 규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거나, 1년 매출 122,814,830.00페소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97,023,720.00페소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회계감사 의견 제출은 우선 연간 종합세금신고서(Declaración Anual)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후 늦어도 다음해 4월까지는 완료해 외부감사회계사가 직접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감사 단계 및 감사 내용

- 세무(법무)감사(Revisión de Impuestos): 이는 회사가 납세의무를 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과정으로서 부가가치세(IVA), 법인소득세(ISR), 지방세(Impuesto Estatal),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등의 납부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한다. 또한,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및 국세청 등록, 사업허가 관련 서류 감사(예를 들어, 허가 받지 않은 사업을 하는지 여부), 회사 내 자체 회계시스템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 내부관리감사(Revision del Control Interno): 회사의 회사 운영 정책 및 기획의 완수 여부 감사, 회사의 자산·판매·수금관리, 직원관리, 회사의 결재 과정을 감사한다. 즉, 회사의 자금관리 방식 및 자금의 흐름 파악에 중점을 둔다.
- 구체적 수치 확인(Revisión de Cifras):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구체적 증빙자료와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
- 회계감사 마감, 연간종합세금신고서 작성(Cierre de Auditoria, Declaración Informativa y Anual): 회사의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해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결산한 다음에 국세청에 세금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감사보고서의 종류

감사보고서에는 재무감사보고서(Dictamen Financiero)와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가 있다. 재무감사보고서는 회사에 대한 재무분야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건전성 여부를 멕시코의 재무 규범에 맞추어 감사하고 작성한다. 본 보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본 회사와 거래하기에 앞서서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신용할부구입 등과 같이 거래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본 회사에 대한 신용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세무감사보고서는 재무감사보고서와는 달리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세청에 본 회사의 회계 상황 즉 세금납부상황과 세금납부의 근거가 되는 매출매입자료, 회사의 비용 관련 자료를 보고해, 납부한 세금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가 재무감사보고서와 따로 작성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의견의 종류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Dictamen sin Salvedades), 한정의견(Dictamen con Salvedades), 부정적의견(Dictamen Negativo), 의견자중(Dictamen con Abstención de

Opinión)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중 적정의견과 한정의견은 감사의 합격선이고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자중은 불합격이 되는 것이다. 적정의견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표가 멕시코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합치되고 있습니다."(En mi opinión, los estados financiero están en conformidad con los Principios de Contabilidad generalmente aceptados en México.)

2.2.2. 회계처리상 유의사항

❯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서류 작성 및 보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멕시코 경제부에서는 회계매뉴얼(Manual de Contabilidad)을 보급하고 다음과 같이 각 기업이 회계 업무에 있어 작성 및 비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입출금전표(Libro o registro de ingresos y egresos)
- 현금출납부(Libro de caja)
- 수취계정부(Libro de cuentas por cobrar)
- 지출계정부(Libro de cuentas por pagar)
- 월급지급명부(Libro de sueldos)
- 증빙서류철(Archivo de comprobantes)

상기 서류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Contador Público)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회계 서류의 의무보존연한은 5년이나, 멕시코의 경우 국세청(SAT)이나 관세청(Aduana México)에서 갑작스럽게 5년 이전의 회계자료를 요청하며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한국 진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회계 자료를 확실히 작성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 내 회계시스템 설치 및 회계사 고용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자료를 경리사원이 담당하고, 관련 서류를 외부 회계사사무실에 보내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요한 증빙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있어 이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회사 내에 회계사가 상주해 자금의 흐름 관리와 회계서류 작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킬라도라(보세임가공) 업체의 세금 관련 규정 숙지

멕시코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세임가공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세율법인세(IETU)에서도 주택, 대형유통점, 보세임가공업체에 대하여는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데 투자의 성격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적재산권

3.1. 개요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1991년 산업재산권법(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발효된 후 2021년까지 18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특히, 1994년 개정을 통해 특허권 부여 대상 확대 및 여타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지적소유권 보호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또한,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Patentes), 산업디자인(Diseños Industriales), 실용신안(Modelos de Utilidad), 상표(Marcas), 원산지표시(Denominación de Origen), 산업기밀(Secretos Industriales) 등의 산업재산권(Propiedad Industrial)과 저작권(Derecho de Autor)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경우 1996년 발효된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파악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에서 지적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둘로 분류된다. 산업재산보호연방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과 저작권연방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표 Ⅲ-5 | 멕시코 지적재산권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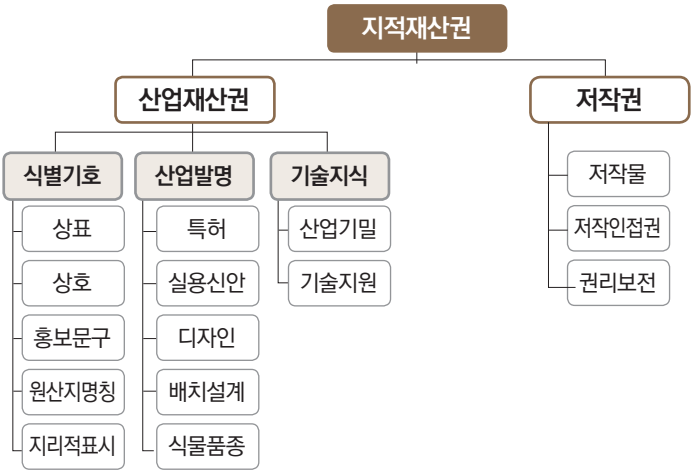

자료: MACDONEL, URIBE Y ESQUIVEL 법무법인 정리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다양한데, 먼저 연방검찰청(PGR: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불법 복제품의 단속, 범법자 구속 등의 집행 업무(멕시코 연방검찰청 소속 산업·지적재산권범죄특별검사 Fiscalia Especial en Delito de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를 맡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telectual)이다. 특허청은 과거 경제부 산하기관이었다가 1994년 독립기관으로 바뀌어 멕시코 내 지적재산권 승인·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멕시코는 상표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예전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약한 처벌, 뿌리 깊은 불법행위로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관(Aduana) 또한 밀수품 수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공공교육부(SEP) 산하에 저작권관리청(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을 설립하여 저작권의 등록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3.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보호대상에 따라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그 밖에 영업비밀 · 노하우, 원산지표시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한다. 산업재산권의 기본적인 등록요건은 권리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IMPI)의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3.2.1. 특허

특허권의 부여는 신기술의 발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해 특허권의 제품 및 제조과정을 보호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이용 · 사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타인에게 처분 · 양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은 특허권 관련 국가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국내에 특허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해당국(제3국)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동 시간이 경과하면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수출이나 투자 시에는 반드시 멕시코에 출원 · 등록을 받아야만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참고로 해외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따른 출원절차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인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 역시 특허출원 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출원인의 의사와 심사 절차의 진행현황과는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특허출원의 내용을 알리는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공개기간(18개월) 이전이라 할지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관보(Gaceta del IMPI)를 통해 특허출원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증을 획득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3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되면 출원일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독점권의 보호를 받으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공익으로 환원된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료는 4,550.00페소, 특허권 관보 공고료는 1,185.35페소, 특허증 발급료는 3,099.84페소이다. 16% IVA(스페인어로 '부가세'의미)는 별도로 내야 한다.

3.2.2. 실용신안

실용신안권은 실용상의 편리를 위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권리로, 특허의 발명과 같은 기술적 창작의 진보성 · 고도성은 요구하지 않으나 신규성과 산업적 응용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받는다. 멕시코에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료는 2,000.00페소, 실용신안증 발급료는 661.79페소이다. 모두 IVA는 별도 부과된다.

3.2.3. 산업디자인 · 의장

디자인은 제품의 내부구성이나 작동원리 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물품의 외관상 나타나는 미감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 형상, 도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할 때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에서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의 결합을 통해 고유하게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도면(Dibujo Industrial)과 제품의 입체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모델(Diseño Industrial)로 분류된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 등록을 마치면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등록 출원료는 실용신안등록 출원료와 동일하여 2,000.00페소이고 사용허가인증서 5년 발급료는 5,770.45 페소이다. 모두 IVA는 별도 부과된다.

3.2.4. 상표권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 또는 상징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상표권은 자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본 기능과 품질보증기능, 출처표시기능, 광고선전기능, 신용보증기능 및 소비자보호기능, 재산적 기능 등과 같은 파생 기능을 갖고 있다.

멕시코에서 상표등록은 상표명(Nominativa), 로고(Innominada), 상표명과 로고 결합(Mixta) 혹은 입체상표(Tridimensional) 등 4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 출원 후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기까지는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등록 진행상황은 인터넷 사이트(http://marcanet.impi.gob.mx/marcanet/controler/TramiteExpedienteBu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법적보호는 상표등록출원 신청일부터 법적보호를 받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후로 같은 기간으로 연속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상표등록 출원료는 2,695.18 페소, 갱신료는 2,597.77 페소이다. 모두 IVA는 별도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법 상표부분에 다음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첫째, 상표출원 신청 시 이는 특허청의 웹 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한 달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상표와 음성적 또는 시각적으로 유사해 타인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자는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특허청에 해당 상표 등록의 반려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상표 등록 후 매 3년간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상표소유권자가 지난 3년간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의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최근들어 행정절차가 간소·전자화되어 인터넷 상으로도 상표출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등록까지의 기간도 예전과 비교하여 단축되었다.

단체표장

단체표장(Marcas Colectivas)이란 각종 조합, 협회 등 일정한 목적 하에 구성된 생산·제조업체 혹은 서비스업체들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단체 표장에 관한 규정은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산업재산법 98조)법인이 아닌 단체나 재단은 단체표장을 출원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표장은 합법적으로 성립한 단체만이 소요할 수 있다. 단체표장 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정관(단체표장에 대한 사용규칙)을 첨부해야 한다. 단체 표장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인데 그 구성원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관에 단체원의 사용에 대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다. 출원절차 및 금액은 상표등록 출원 절차와 동일하다.

상업광고상표

상업광고상표(Avisos Comerciales)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업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 알리는 상업적 광고 목적의 문구 또는 문장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Nike의 'Just do it!'이 있다. 동 상업광고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료 및 갱신료는 상표와 동일하다. 법적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상호명

회사나 사업(영업)장에 대해 도안이 포함된 상호명(Nombres Comerciales)을 타 업소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멕시코 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동 상호명의 보호범위는 실제적인 고객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특별한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동 서비스 사용자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상호명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 대신 특허청관보에 공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독점적인 상호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좀 더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보에 공고한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도 가능하다. 등록료 및 갱신료는 상표와 동일하다.

3.2.5. 영업비밀 · 노하우

영업비밀(Secretos Industriales)은 경제 활동에 있어 경쟁적, 경제적 우위를 유지 및 획득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말하며, 생산방법은 기술정보, 판매방법은 영업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성분, 처방, 제조방법, 제조공정, 설계도, 청사진, 도면, 실험 및 검사방법, 편집기술, 신제품의 정보, 조리법 등은 기술정보이며, 고객명부, 유통 및 마케팅의 방법 및 형식, 사무실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의 구입처, 가격표, 입찰계획, 판매통계, 재산명목, 합병계획, 광고계획 등은 영업정보이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선 영업 비밀을 규정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소유주는 기밀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기밀', '비밀'이라는 라벨을 붙여 전자문서 혹은 마그네틱 매체, 시각적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혹은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는 기밀 협약을 체결 후 공개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줄 수 있으나,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은 멕시코 특허청에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호기간도 영업비밀이 누설되기 전까지 무제한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연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3.2.6.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Denominacion de Origen)란 지리적으로 그 상품을 구별하여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 혹은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으로, '보르도', '스카치', '테킬라'와 같이 지역명

이 제품의 명성 · 품질 등과 직결될 경우 이를 표시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원산지표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WTO 협정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멕시코는 리스본협정의 당사국이며, 원산지표시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을 통해 원산지표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가 등록되면 특허청은 그 사용권을 일정요건을 충족한 일반 개인 혹은 법인에게 10년간 허가하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산지표시 등록신청료는 1,547.78페소이며 등록료는 818.08페소이다. 모두 IVA는 별도 부과된다.

3.2.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배치설계권(Esquemas de Trazado de Circuitos Integrados)은 특허권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권리이다. 배치설계권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회로소자와 연결도선의 배치 설계도면이나, 실질적인 보호대상은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칩, 반도체칩이 내장된 최종제품(컴퓨터, 통신기기 등)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집적회로 배치도 또는 배치설계가 원본이어야 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의 출원유예제도가 있으며, 알려진 원본의 설계는 모두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배치설계권자는 회로배치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수입, 판매 혹은 승인 없이 배포하는 것을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신청등록 수수료는 1,044.91페소, IVA 별도이다.

3.3.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성과인 문학, 예술작품 등의 창작물,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저작자(Autor de Obra) 혹은 그 권리 승계인이 주장할 수 있는 독점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이 표현형식과 특정 기술적 사상에 대한 발명을 보호한다면, 저작권은 사상 및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창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저작권은 심사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관리청에 일정 등록이 없이도 보호를 받으나,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3.1. 저작물

멕시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문학, 음악, 무용

나. 미술, 건축, 촬영, 영화 및 영상 창작 작품

다. 도형 및 모형 작품

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바. 독창적 캐리커처

사. 사진작품

아. 백과사전, 문집과 같은 각종 작품 모음집 등

3.3.2. 저작자의 권리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첫 번째 범주는 인격권(Derecho Moral)으로 이는 저작자만이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일신 전속적인 영구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불가하고 만료기간·시효가 없으며, 취소나 압류가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재산권(Derecho Patrimonial)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경제적인 권리이며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저작 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할 수 없다. 저작권 및 저작권을 양도하는 각종 계약서를 저작권관리청의 저작권등기소(Registro Público del Derecho de Autor)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일생 동안, 그리고 사후 100년간이며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사후 출판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첫 출판일로부터 100년간 지속된다. 단, 영화, 영상작품, 라디오 프로그램, 각종 모음집, 서적편집, 음악 및 연극 공연 등은 50년, 사진작품 및 음반은 75년간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3.3.3.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조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Derechos Conexos)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저작인접권 소유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3.4. 독자적 캐릭터

연방저작권법 173 조에 의거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실제인물인 스포츠선수나 연애인 및 예술인들의 독자적 캐릭터(Reservas de Derechos al Uso Exclusivo)를 보호한다.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3.5.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자는 개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 혹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Sociedades de Gestion Colectiva)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의 대리 혹은 중개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저작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6. 분쟁의 조정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이란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서,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 저작권위원회(Junta de Avenencia)나 중재위원회(Arbitraje)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토록 합의를 주선·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우선 저작권관리청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며,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중재과정 중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4. 연방식물품종보호법

식물의 신품종 보호제도(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eles)는 식물신품종 육성자(Obtentor)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멕시코에서는 농림수산부(SAGARPA: 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ón) 산하 국립종자검열확인서비스국(SNICS: Servicio Nacional de Inspección y Certificación de Semillas)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 품종보호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출원일이 아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3.5. 지적재산권 관련 대표적인 기관

❯ 멕시코 특허청 (IMPI)

- 주소: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on Xochimilco, C.P. 16020, Ciudad de México, Mexico.
- 전화: (52-55) 5334-0700
- 웹사이트: http://www.gob.mx/impi

❯ 멕시코 저작권관리청 (INDAUTOR)

- 주소: Puebla 143, Colonia Roma Norte. Delegación Cuauhtémoc, C.P. 06700, Ciudad de Mexico, Mexico.
- 전화: (52-55) 3601 8210 y 16, 01800 2283 400
- 웹사이트: http://www.indautor.gob.mx

❯ 멕시코 연방검찰청 소속 산업 • 지적재산권범죄특별검사 (UEIDDAPI /FGR)

- 주소: Provada Pilcomayo 160, Argentina Poniente, Miguel Hidalgo, 11230 Ciudad de México, CDMX
- 전화: (52-55) 5346-0000
- 웹사이트: http://www.gob.mx/fgr

3.6. 지적재산권 보호구제 방법

3.6.1. 보호구제 방법

3.6.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어 저작권이 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저작권자 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민사상 구제, 행정적 구제 및 형사상 구제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사적 구제 방법은 크게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수 및 폐기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자가 위반자, 위반업체를 상대로 저작권관리청에 행정적 위반 심의판결의 소를 제기하는 구제 방법이 있다. 멕시코 연방저작권법 230 조에 의거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인격권, 출판권 혹은 저작권의 위탁관리업체의 관련법 위반이 있을 경우 저작권관리청은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임금 (2019년 현재 $102.68페소)의 1,000일에서 5,000일 혹은 5,000일에서 최고 1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저작권 침해가 재산저작권을 침해하여 상업적/경제적 문제로 발전 될 경우에는 저작권관리청이 아닌 특허청(IMPI)에서 이를 담당한다. 이 경우 멕시코 연방저작권법 232조에 의거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법령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500일에서 최고 40,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위반자가 불법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추가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형사상 구제 방법으로는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자는 불법복제물을 몰수하고 침해한 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연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형법 (424-429조) 424 bis조에 의거 불법복제상품을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운송한 자에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저인금을 기준으로 2,000일에서 20,000일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에 속함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3.6.1.2.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인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IMPI)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일단 특허청(IMPI)에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을 신고하면 동 기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는 데 보통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특허권은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기도 한다).

특허청에서는 예방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압수, 관련 생산기기의 압수 등의 조치를 조사 초기에 취할 수 있다. 특허청(IMPI)의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는 특허권침해가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특허청(IMPI)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예방조치 진행에 따라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표권자는 제품에 상표권, 특허권이 있음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당한 업체는 항소를 위해서는 일단 상표권자가 특허청(IMPI)에 예치한 금액의 두 배 정도를 특허청(IMPI)에 예치하면 최종판결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피고소업체는 특허청의 조사개시 1개월 내에 반박자료 및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도 추가자료 제출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특허청(IMPI)은 위반업체에게 멕시코 최저임금의 2만 배에 해당하는 벌금(1백만 페소)을 부과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위반업체 제품의 파기 및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연방검찰청은 위반 당사자를 불법 복제상품의 제조 및 유통죄로 형사처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 하루 최저임금(141.70페소)의 500배에 해당하는 추가벌금이 매일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고 9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까지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IMPI)은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보상, 변호사 소송비용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허청(IMPI)의 결정이 난 후 패소한 업체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Tax and Administrative Justice)에 항소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까지 약 18~24개월이 소요된다. 연방법원에서도 패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상고가 가능하다.

또한 연방검찰청(PGR)은 멕시코 산업재산권 223, 223 bis, 224 조에 의거 불법상표도용 제품을 공공장소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지적재산권의 행정적위반을 한 누범/재범자 또는 영업비밀권 침해자에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최저임금의 100배에서 10,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고의로 상표위조 및 위조상표 제품의 수입-보관-운송-제조-유통-판매를 하는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0배에서 20,000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한다. 이는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에 속함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고소는 연방검찰(PGR)에 제기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은 침해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특허청의 최종결정 이후 2년 이내에 피해액 변상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피해자는 위반업체에게 심판/ 소송 등 정당한 법적절차 통해 불법상표도용 및 불법복제상품 총 제품판매가격의 40%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부당이익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표 III-6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령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저작권	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식물	연방식물품종보호법(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eles) 연방식물품종보호조례 (Reglamanto de la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
세관	관세법 (Ley Aduanera)
관련법	민법(Código Civil para Distrito Federal o Federal) 연방행정소송법(Ley Federal de Procedimiento Administativo) 연방형법(Código Penal Federal)

3.6.2.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3.6.2.1. 분쟁사례

멕시코에서 발생한 우리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사례를 통해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자.

상표 무단선등록 사례

1. 사건 개요

한국업체 I사는 수년 전 멕시코 현지업체 (딜러) D사와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멕시코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권을 주고 거래하던 중 멕시코시장 및 중남미 시장을 보고 현지 직접 진출을 하던 중 대리인이 무단으로 자사의 상표를 멕시코 특허청에 선등록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것을 확인함. 해당 딜러는 상표권 양도 혹은 취소관련 한국본사에 터무니없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였음.

2. 조치 및 결과

해당 딜러와 타협점을 찾지 못해 I사는 멕시코 특허청에 상표 무단선등록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3. 시사점 및 유의 사항

본 사례는 독점계약서에 상표권자를 분명히하였으나 한국업체가 멕시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사전에 하지 않아 멕시코 딜러가 악의로 상표권을 선 등록한 사례이다.

선등록 사례가 발생하면 멕시코 산업재산법(LPI, Ley de Propiedad Industrial)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무단 선등록 취소 혹은 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재판 기간(1년 이상, 행정소송 및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 최장 4년 이상)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지 대리인(딜러)과 대리권 위임계약 시, 관련 지적재산권으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소유권자의 위임없이 대리인이 무단으로 등록한 권리는 무효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분쟁을 원칙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는 아니다. 멕시코 진출 시 현지 딜러와 계약전에 반드시 상표를 자사이름으로 등록하여 상표권자로써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당 국가에 상표를 먼저 등록한 소유권자만이 상표 관련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침해 사례

1. 사건 개요

중국에서 건전지를 생산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R 사는 최근 몇년 전부터 멕시코 내수시장에 자사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제품이 유통되어 엄청난 물질적 손해와 무형적으로는 저질의 상품으로 자사 상표의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 상표는 물론 포장재와 제품까지 거의 동일한 복제상품이 H 라는 중국계 수입회사를 통해 도매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함.

2. 조치 및 결과

멕시코 현지 변호사들과 불법복제품 조사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아 R사는 멕시코 연방 세관에 협조를 구하여 불법제품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연방검찰로 이관하여 불법제품을 폐기처리 하였음. 수입업자인 과달라하라 소재 회사를 추적하였고 중국계 수입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KOTRA를 통해 특허청에 산재권소송비용 지원 요청을 하였고, 침해업체인 H사에 본국 특허청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서한을 보내 경고하자 수출행위가 사라짐.

또한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주요 도시의 도매 재래시장을 방문 불법복제품을 팔고 있는 도소매업자에게 공식 경고장을 나누어 주며 강력한 법적처벌을 경고하자 불법복제품의 유통량이 현저히 떨어짐.

3. 시사점 및 유의 사항

본 사례는 중국내 생산자(추정)가 불법적으로 상표를 도용하여 단속이 심하지 않는 멕시코내 유통업자와 손잡고 R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로 상표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커진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는 거래선을 통해 자사의 상표가 불법유통 되는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복제품 유통 발견 시 멕시코 특허청에 침해단속 요청, 예방조치 요구, 수입/수출의 경우 세관당국에 국경조치를 요구, 혹은 사법조치로 연방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사건 개요

멕시코에서 양말제조를 하는 한국 업체 L사는 월트디즈니회사와 캐릭터 저작권을 양말부문 전 품목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 체결했고, 생산-판매 하던 중 재래시장에서 디즈니 상표를 도용한 불법복제양말상품이 유통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2. 조치 및 결과

침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침해업체의 생산 공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알아낸 후 현지 연방검찰에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고발함.

그러나 디즈니의 저작권을 양도 받은 스페인어 라이센스 계약서를 저작권관리청에 등록하지 않아 고소자의 권리가 없다며 검찰청이 수색/압수영장 (Cateo) 발급 신청 지연 등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후에 라이센스 계약서를 저작권관리청에 등록후 변호사를 통해 위반업체에게 형사고소장을 첨부한 경고장을 송달한 후 불법복제품 생산, 유통량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고소건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함.

3. 시사점 및 유의 사항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가 연방검찰에 접수되었다고 공표한 것만으로도 침해업체의 불법 복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스계약(Lisence Contract)은 영문으로 돼있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청에 스페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자로써 법인격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저작권관리청에 등록하여 더 확실한 법적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L사는 저작권자인 디즈니회사의 법률 팀에 저작권 침해 구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며, 디즈니회사 역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구제절차에 대해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무조항이 명시되있지 않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라이센스 계약서에 라이센스 취득자가 불법복제 상품으로 피해를 보게 될 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의무 조항로 삽입하는 것이 좋다. 즉 사용자와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한인 양말 판매업소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사례

1. 사건 개요

멕시코 현지 라이센스 전문 대리 양도업체인 T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재래시장에서 양말판매를 하고 있는 현지 한인업소를 고발하였고 수색/압수영장을 발급받아 한인상인 및 현지인 근로자 다수를 저작권 침해자로 현장에서 검거하고 상가에 있는 상당수의 제품을 상표도용 불법복제품으로 규정하고 압수함.

2. 조치 및 결과

피소된 한인 상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제품이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제조공장으로 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제품임을 증명하는 매매영수증(Factura)을 제시했으며, 라이센스 취득업자인 제조공장의 법적대리인이 라

이센스 계약서를 지참 연방검찰에 출두하여 합법적인 물건임을 입증함.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취득자인 양말제조 공장 역시 영문계약서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저작권관리청에 라이센스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음. 검찰청은 사문서인 영문계약서는 스페인어로 번역돼있지 않았으므로 증거력 있는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검거된 용의자들을 모두 저작권 침해자로 기소하려 하였다. 또한 제조업자는 상품에 홀로그램 및 에티켓(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합법적 상품임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웠음.

그러나 해당검사를 설득한 끝에 영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임시적/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음.

3. 시사점 및 유의 사항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조업자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인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자로부터 매매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취득한 제조업자는 불법복제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상품에 반드시 상품정보를 표기하는 라벨 및 홀로그램 등을 부착하여 거래선인 최종 판매자가 행정, 사법당국으로 부터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2.2. 유의사항

멕시코에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피해 발생 소지가 있다. 현재 각종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4~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시장 진출에 앞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이 외국기업 지적재산권이 아직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리 등록해서 자국시장 진출을 막는 경우가 있다.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는 특허 관련 법령이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해외 유력브랜드가 현지국에서 사용이 거부된 경우가 많이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기준에 부합해 가고 있으므로 준비를 확실히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침해유형을 보면 침해기업이 초기에 대량 복제해 유통시킨 후 폐업, 증거 인멸 및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법적 대응이 어렵게 된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변호사의 실력뿐 아니라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경험이 많고 인맥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내국법 및 국제협약에 의거해 법률 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인력 부족 및 부정부패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그리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KOTRA가

2021년 6월부로 멕시코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개소할 예정이어서 정부차원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앞으로 IP-DESK의 도움으로 멕시코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됨으로써, 더욱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ESG 경영활용방안

4.1. 멕시코 ESG 동향

전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속칭 ESG는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초기단계로 보여진다. 멕시코에서는 ESG를 ASG(Ambientales, Sociales, Gobierno Corporativo)라고 지칭한다. 2020년 기준, 멕시코의 두 증권거래소 BMW와 BIVA에서 각각 ESG 지수 및 지속가능개발 지수를 발표하였고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 및 발전 사업 개발 등 ESG 관련 화두가 종종 보이나 아직까지는 ESG 정의, 기준 및 시스템을 정립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1.1. ESG 관련 지표

(1) 멕시코 제1 주식거래소(BMV)의 ESG 인덱스

2011년 멕시코 주식거래소(Bolsa Mexicana de Valores, 줄여 BMV)는 IPC Sustentable이라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첫 지수를 주식시장에 발표하였다. 해당 지수는 멕시코에서는 최초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0년 6월, 멕시코 주식거래소는 S&P 다우존스와 함께 S&P, 멕시코 ESG인덱스 지수를 발표하였다. 해당 지수에는 29개의 멕시코 소비재, 서비스, 부동산 관련 기업이 해당된다. 이 기업들은 ESG에 기반한 기업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한다.

29개 기업 목록

Alfa SA A	Coca-Cola FEMSA	Genomma Lab Internacional	Grupo Televisa	Ordbia Advance Corporation	Grupo Bimbo
Alsea SA	Corporación Inmobiliaria Vesta	Genetera	Industria Peñoles	Proligis Property Mexico	Grupo Financiero Banorte
Arca Continental	Crédito Real	Grupo Aeroportuario del Pacífico	Infraestructura Energética Nova	Qualitas Controladora	Grupo Herdez
Banco Santander Mexico	Fibra Uno Administración	Grupo Aeroportuario del Sureste	Kimberly Clark de México	Regional	Grupo Rotoplas
CEMEX	Fomento Económico Mexicano	Grupo Aeroportuario del Centro Norte	Nemak	Walmart de México	

자료: BMV

(2) 멕시코 제 2주식거래소(BIVA)의 지속가능 인덱스

멕시코의 두번째 증권거래소인 La Bolsa Institucional de Valores (BIVA)에서는 FTSE Russell과 협력하여 2020년 1월 지속가능 지수인 FTSE4Good BIVA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잣대로 BMV의 초기 IPC Sustentable 지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La Bolsa Institucional de Valores(BIVA)는 멕시코의 첫번째 거래소인 BMV에 비해 신생 거래소로 2017년 공식 거래소로 인정하여 개장하였다.

(3) 멕시코 정부의 ESG 기준 마련 동향

(a)국가개발 프로젝트

2020년 8월 멕시코의 국가 단위 프로젝트 및 금융 개발을 담당하는 국영 개발 은행 Banobras(El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úblicos es una institución de banca de desarrollo mexicana)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ESG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ESG 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개발하여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개발 통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로 관련 평가체계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b) 퇴직연금공단 투자 기준

2020년 9월 멕시코 재무부는 퇴직연금공단(CONSAR)과 함께 투자에 있어 ESG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언급했다. 2022년 1월부터 공단은 자금 투자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주제와 관련된 기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에 ESG 관련 내용을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c) 지속가능개발 국채

2020년 9월 14일 멕시코는 유엔의 도움을 받아 7억 5천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국채를 세계 최초로 발행하였다. 멕시코 재무부는 지속가능발전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 후 발표하였으며, 이번 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테마에 투자하고자 하는 여러 분야의 투자가들에게 이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국채는 7년짜리로 2027년 9월 만료일 기준, 이자율 1.603%이다.

추가로, 2020년 9월 27일 멕시코 국영 개발 은행 Banobras는 멕시코 제1 증권거래소 BMV에 지속가능 국채로 75억페소(약 3억 7천불)를 발행하였다. BMV에 따르면 해당 국채 발행을 통한 수익은 기초 인프라, 공공 서비스 인프라, 재난 복구, 지속가능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한다.

(d) 민간부분 투자

2020년 10월 기준, 여섯개의 신규 그린 ETF가 멕시코 증권거래소에 발표되었다. 해당 ETF에는 SIC(Sistema Internacional de Cotizaciones)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 인덱스들은 ESG 기준으로 기업 및 정부의 투자 및 위험 관리 등을 평가하여 반영된다. 또한 2021년 2월, 현지 은행 Banorte, Santander, CitiBanamex 등이 연합하여 ESG 투자 관련 자금을 결

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4.1.2. 관련 인증 및 표준

SA 8000은 미국의 SAI 기관에서 발행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표준으로 멕시코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각 기업별 사회적 책임(직장 내 노동자의 보건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 ISO 14001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인증으로 환경 문제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해당 인증의 경우,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적극 취득 중인 인증으로 확인된다.

4.2. 관련 법안 (환경, 노동, 상법, 정보공개 등)

4.2.1. 정보공개 표준화

ESG 관련 정보가 재무정보로, 투자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ESG 관련정보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ESG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신뢰할 만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정한 평가업체를 통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의 의무화와 표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멕시코 역시 세계적인 흐름인 기후협약, 탄소중립, 탈석탄 선언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풍력 · 태양광 · 수소전기차 등 ESG 관련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 비춰보면 멕시코는 아직 ESG 관련 정보공개의 표준화 작업이 늦은 감이 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 보인다. ESG 정보공개 공시의무나 표준화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관련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멕시코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헌법에서부터 공공 정보의 열람권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도 양자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한다. 2015년 5월 제정된 공공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접근성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on Pública) 의 경우 연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반면, 2010년 7월 제정된 민간 영역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de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on de los Particulares)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보관하는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조항과 흡사하다. 또다른 관련법으로 정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on de Sujetos Obligados)이 존재한다. 2017년 1월 발효되었다.

4.2.2. 탄소국경세

멕시코는 1980년 제정된 생산 및 서비스 특별세법 (Ley del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on y Servicios)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로 화석연료세 (Impuesto a combustibles fósiles) 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10월 Peña Nieto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개혁에 따라 국영석유공사인 PEMEX(페멕스)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해당 개방을 통해 해외 석유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의거 2014년 8월 11일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탄화수소법 발효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석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관련기관으로는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CRE) 이 있다.

현 멕시코의 AMLO 정권은 PEMEX로의 권한 집중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채택했다. 이는 외부로부터 석유산업의 영향을 받지않고, 멕시코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시설 개발 및 6개 정유시설 현대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2021년 탄화수소법 개정을 추진, 이후 발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021년 5월 20일 탄화수소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 요구 시 그 조건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 한함을 추가하였고 허가 심사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소견임을 의미한다는 것과 인가기관에서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갱신 절차를 강화했다. 그 밖에도 석유도난 방지 및 안보 사유에 한해 민간기업의 조업 허가증 효력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PEMEX 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석유산업 부분 주요 민간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인다”고 선언하며 “2023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친환경을 표방하고 당선한 미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을 연결고리로 새

무역장벽이 출현할 수도 있다.

탄소배출 규제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EU나 미국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되면서 멕시코 정부 역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극 강화해 갈 것이며 멕시코 내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등 관련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4.2.3.의무적 CSR

멕시코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Responsabilidad social empresarial o corportativa (RSE o RSC)로 이해한다.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RS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멕시코 기업들과 멕시코에 진출한 수많은 외국 투자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 브랜드가치 향상과 위험관리 등을 목적으로 CSR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멕시코합중국헌법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25조 3항에 "민간 부문(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멕시코 헌법은 기업의 국가 경제 · 사회 발전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멕시코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련된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는 중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CSR을 법으로 강제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CSR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CSR활동들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4.2.4. 환경규제

멕시코 환경규제 관련 1988년 1월 28일 제정된 생태학적 균형 및 환경보호일반법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이 있다. 이 법은 멕시코 헌법이 천명한 생태학적 균형의 보존 · 복원 및 환경과 국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생물학적 다양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보호, 사회참여 및 환경정보, 통제 ·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처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그 밖에 경과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법으로는 2003년 제정된 폐기물 종합처리 및 예방 일반법 (Ley General para la Prevencion y Gestion Integral de los Residuo)이 있는데 방사능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의 분류, 관리 및 처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주정부차원에서는 멕시코시티의 경우 2003년 제정된 고형폐기물법(Ley de Residuos Solidos)이 있다.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 조치 중 하나로 멕시코시티 주정부는2019년 6월 25일 고형폐기물법(Ley de Residuos Solidos)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배포, 판매를 제한했다. 멕시코시티 내 상업 시설은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2,000~168,000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닐봉투는 식물성 전분으로 만들어져 퇴비화 가능한 것, 그리고 위생상 문제로 냉동 육류와 같은 식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의료용 빨대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닐봉투가 아닌 천가방등 에코백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자리가 잡힌 모습이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는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개, 접시, 빨대, 플라스틱 뚜껑, 컵, 풍선,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커피캡슐, 일회용 플라스틱 탐폰 어플리케이터 등의 더 많은 품목으로 제한 조치가 확대되었다. 해당 조치 관리감독과 관련해 멕시코시티 환경부는 “감시관이 있을 예정이지만 도시 전체를 모두 감시는 할 수 없으므로 주요 감시자는 소비자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멕시코시티 외에도 Baja California, Colima, Durango, Hidalgo, Michoacán, Morelos, Nayarit, Nuevo Léon, Oaxaca, Querétaro, Quimtana Roo, Sonora, Tabasco, Veracruz, Yucatan, Zacatecas 주 등이 법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에서는 2021년 품목 확대에 대한 조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북미무역협정(USMCA)은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함께 집행을 강화하는 다자간 환경규범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로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4.2.5. 근로자 인권 부문

국제사회의 요구로 인해 최근 멕시코는 노동 관련 헙법 개정, 국제조약 비준 및 연방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4.2.5.1. 노동 관련 헌법 개정

2017년 2월 24일에 노동 관련 헌법 제 107조 및 제 123조가 개정되었다. 특별히 123조 개정을 통해 그 간 행정부 산하의 노동중재위원회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가 가지고 있던 조정 기능 (Funcion Conciliatoria)은 독립 헌법기관 (Organismo Descentralizado)인 노동조정센

터 (Centro de Conciliacion)로 이관하고 중재 판정 (Laudo) 기능은 사법부 산하에 신설된 노동법원 (Tribunales Laborlaes)으로 이관하여 노동법원이 판결 (Resoluciones)을 내리게 하고 노동중재위원회는 폐지했다. 즉 이제 노동 분쟁은 우선 노동 조정센터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연방 또는 지방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중재위원회를 사법부 산하로 옮긴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중요 개정 내용 중 하나인 단체 협약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 있어, 이제 노조는 조합원의 대표성 (Representacion de los trabajadores)을 증명해야 한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조정센터에서 모든 노조와 단체협약의 등록을 받게 되었다.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노조대표성 (Representatividad de las organizaciones sindicales) 원칙과 단체협약 서명, 등록, 공탁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노조 지도부 선출은 조합원의 개별, 자유, 비밀 투표에 의해야 한다. 이는 노조간 의견 충돌, 단체 협약 체결 요청 그리고 지도부 선출 시에도 조합원의 개인, 자유,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 및 신장시켰다. 이는 단체 협약 체결에 있어 조합원의 실질적이고 형식을 갖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5.2. 노동 관련 국제 조약 비준

연방 헌법의 개정에 이어 멕시코는 2018년 9월에 ILO (국제노동기구) 98호 협약 가입을 비준하고, USMCA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북미무역협정) 또한 타결하였다.

ILO 98호 협약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의한 反노조 차별 행위와 노동자단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ILO 98호 협약 제 1조는 "노동자는 고용의 측면에서 反노조 차별 행위 (anti-union discrimination)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시간 외에 혹은 사용자 동의하에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행위"를 反노조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USMCA 타결과 2020년 7월 발효로 멕시코는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고 어용노조 퇴출 및 민주적 노조 지도부 구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동법 준수 의무 강화 및 멕시코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등을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 요구에 직면했다.

참고로 멕시코의 법 위계질서는 헌법, 국제조약, 연방 법률의 순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노동 규정에 맞추어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이 개정되어야 한다.

4.2.5.3. 멕시코 연방노동법 개정

근로자 인권보호 부문 관련 크게 3차례에 걸쳐 연방노동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 12월 1일 42년 만에 연방노동법 전면개정에 가깝게 1,010개 조항 중 242개 이상의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본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근무 허용, 수습채용 허용, 정당 해고사유 강화, 소송 패소시 사용자의 지급 상한액 설정 등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업에게 편리한 노동환경을 만들었고 임시채용 및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여성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가사 근로자, 농업, 임업, 목축업 근로자, 광산 근로자 등 일차산업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였다.

2019년 5월 1일 연방노동법 개정을 통해서는 노조의 민주주의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더욱 보장하고 독립적 헌법기관인 연방 노동 조정 및 등록센터 (Centro Federal de Conciliacion y Registro Laboral)를 수도에 설치하고 각 주에는 하부기관인 노동 조정 및 등록센터 (Centro de Conciliacion y Registro Laboral)를 설치하여, 연방 및 지방의 노조 및 단체협약을 등록하게 하고, 노사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노동 판결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산하에 신설된 노동법원 (Tribunales Laborlaes)으로 이관하여 노동법원이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판결 (Resoluciones)을 내리게 하였고 재판 절차는 대부분 구두 심리로 진행하게 하여 경제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신 차별 (discriminacion por embarazo)이나 노동 착취 (trata laboral)에 대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해고당한 임신 노동자가 소를 제기한 후 요청할 경우, 판사는 사용자로 하여금 IMSS 가입 탈퇴의 중지를 명령할 의무가 있게 했다.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합의하여 성차별, 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의무을 지게 했고 노동자가 임신차별, 성취향 차별, 성차별, 노동착취, 아동착취와 같은 직장 내 차별을 주장하였을 경우, 판사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보장권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할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게 했다.

최근 2021년 4월 23일 개정된 연방노동법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무직이나 생산직 관련 일반적인 인력 파견 즉 아웃소싱을 금지하였다. 이는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PTU 미지급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아웃소싱 파견근무자 사용을 줄이고 파견 근로자의 노동법 상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경비, 운전, 식당, 청소 등의 특성이 있는 용역이나 공장 건설 등의 도급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인력 파견은 금지이나 헤드헌팅 및 직무 교육

서비스는 허용했다.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관련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사회복지부 (STPS)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 해당 용역업체나 도급공사 업체는 공공 명부(padrón público)에 등록되어야 한다. 연방노동사회복지부는 기업의 고용주들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채용 근로자에 편입시켜야 하는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세무상 효과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멕시코 정부는 조세 포탈죄, 세금공제 혜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화된 노동 규정에 의거 멕시코 기업들 내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근로자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아웃소싱 금지로 인해 파견 근무자 사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4.3. 향후 동향 및 시사점

멕시코의 상장기업은 아직까지 지속가능경영 부문에 대한 별도 공시의 의무가 없다. 2020년 12월, 상원의원인 Nancy de la Sierra Aramburo와 Geovanna del Carmen Bañuelos de la Torre는 환경보호 및 생태 관련 일반법에 대한 개정안을 신청하였다. 해당 개정은 기업의 조업활동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최고 유행 키워드로 급부상중인 ESG에 대해 멕시코의 대응 및 관련 현황은 아직까지 미미하나 각 분야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지 기업의 대응현황 조사 결과, 현시점 ESG 관련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임을 알 수 있었다. 현지 제조업 분야는 공정 시스템의 친환경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환경 분야와 사회적 공헌활동(CSR)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접근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멕시코의 기업들에 대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법안 개정 등의 변화의 바람은 향후 멕시코의 ESG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현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바, 해당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BMV, BIVA, Expansión, Milenio, Cámara de Diputados, SEMARNAT, BANOBRAS, El Economista,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SGS, Líderes Mexicanos, Responsabilidad Social Empresarial y Sustentabilidad.

KOTRA자료 22-026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21년 개정판)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2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228-7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979-11-402-0228-7 (95320)

Mexico